

훈령·예규·고시

농지관련 규정집

2012. 10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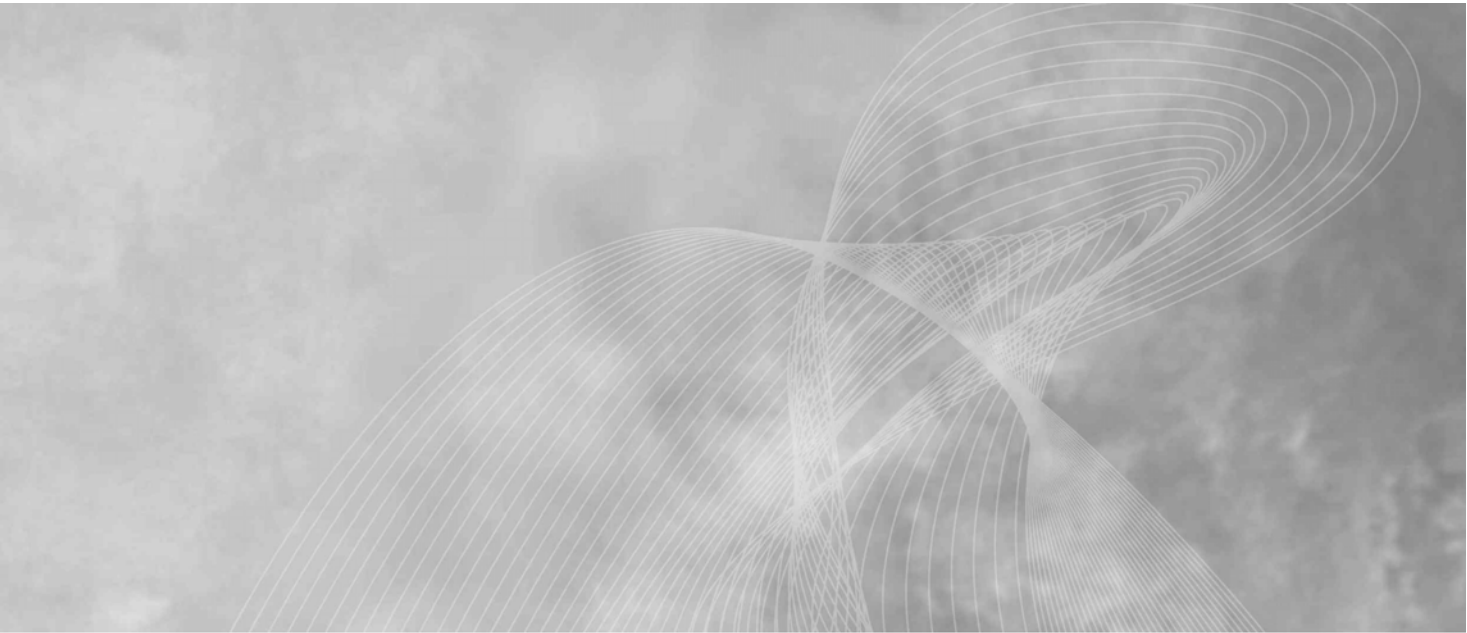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 0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 1
- ▶ 0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 21
- ▶ 03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 59
- ▶ 04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 121
- ▶ 05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 관리규정 · 151
- ▶ 06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 · 167
- ▶ 07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 185
- ▶ 08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 189
- ▶ 09 주말 · 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 193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담당자

| 규 정 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
|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 박광덕 | 500-1720 |
|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 | 박광덕 | 500-1720 |
| 3.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 김동남 | 500-1725 |
| 4.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 남기현 | 500-1724 |
| 5.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 최혜선 | 500-1726 |
| 6. 농지원부작성 및 관리지침 | 최혜선 | 500-1726 |
| 7.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 임정근 | 500-1717 |
| 8.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기준 | 임정근 | 500-1717 |
| 9.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 임정근 | 500-17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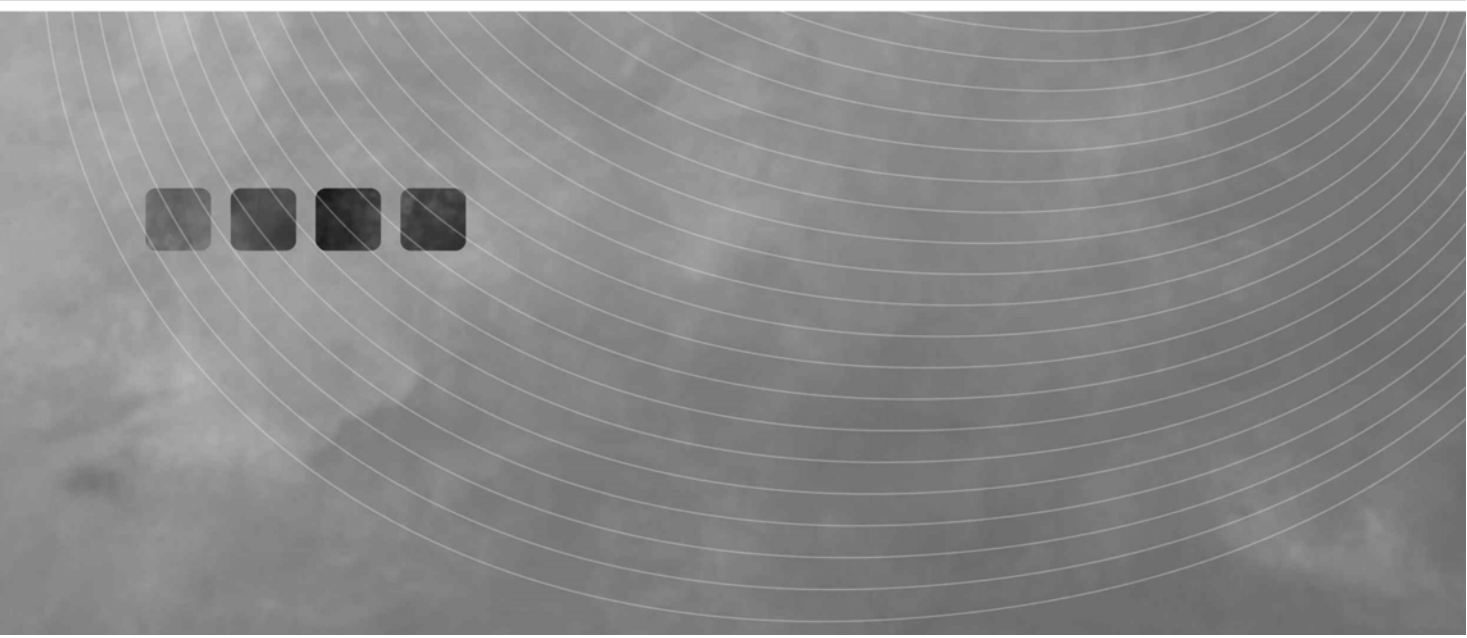
0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 | | | |
|----|--------------|-----------|-------|
| 제정 | 1995. 12. 29 | 농림부예규 | 제183호 |
| 개정 | 1999. 1. 15 | 농림부예규 | 제196호 |
| 개정 | 1999. 6. 2 | 농림부예규 | 제203호 |
| 개정 | 1999. 12. 7 | 농림부예규 | 제210호 |
| 개정 | 2002. 5. 18 | 농림부예규 | 제217호 |
| 개정 | 2002. 7. 15 | 농림부예규 | 제218호 |
| 개정 | 2002. 12. 31 | 농림부예규 | 제220호 |
| 개정 | 2006. 1. 10 | 농림부예규 | 제224호 |
| 개정 | 2007. 8. 16 | 농림부예규 | 제231호 |
| 개정 | 2008. 6. 13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 제 2호 |
| 개정 | 2009. 8. 24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 제 17호 |
| 개정 | 2009. 11. 28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 제 23호 |
| 개정 | 2012. 7. 18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 제 42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나.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제1호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

3.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부지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②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기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④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 ⑤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축사 및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 급여(給餌)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진입로, 사육 용기 세척시설 및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제2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저당권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나. 한국농어촌공사

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 및 그 중앙회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4.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는 '09.11.28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5.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가.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라.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마.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4조(자격증명발급대상자) 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나. 농업법인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단체 등(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 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가.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6.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 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7.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8. 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제3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제5조(자격증명 발급권자) 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6조(자격증명 신청자) ①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자격증명의 발급신청) ①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농지취득인정서(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3.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9조의2에 따라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4.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
- ④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 대상 농지가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신청 대상 농지가 법 제6조제2항제10호의바목에 따른 비축용 농지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인지 여부

제4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나.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다.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라.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마.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용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사. 신청자의 영농의지

6.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제4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이 차지하는 농지 면적 : 330제곱미터 이상
 - 나. 가목 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8.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는 경우에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1. <삭제, '12.7.18>
 2. <삭제, '12.7.18>

제9조(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자격증명발급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농지 등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이외의 사유로 미발급 통보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제9조의2(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당해 경매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구·읍·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전용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후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전용 허가취소 또는 농지전용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해당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취소
2. 해당 농지를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 사항을 신규 취득자 앞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 취득자 명의로 농지전용 허가

제5장 농지취득인정

제10조(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소유 농지 및 신청대상 농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 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제10조의2(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 보고) 시·도지사는 다음해의 1월 31일 까지 해당 년도의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1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 등) ① 시·구·읍·면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대장파일(자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록 보관하는 대장)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구·읍·면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제1항 후단에 따른 새올행정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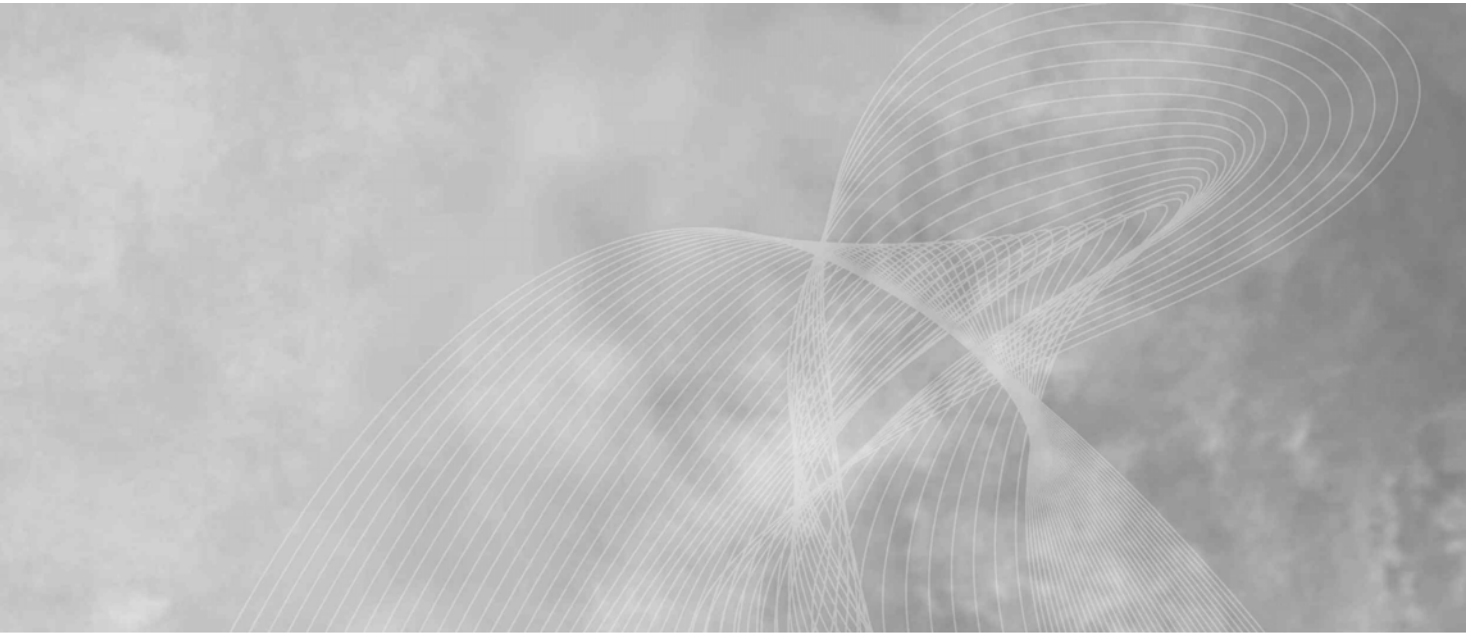
③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권이전내용을 농지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 시·구·읍·면장은 다음해의 1월 20일까지 해당 년도의 자격증명발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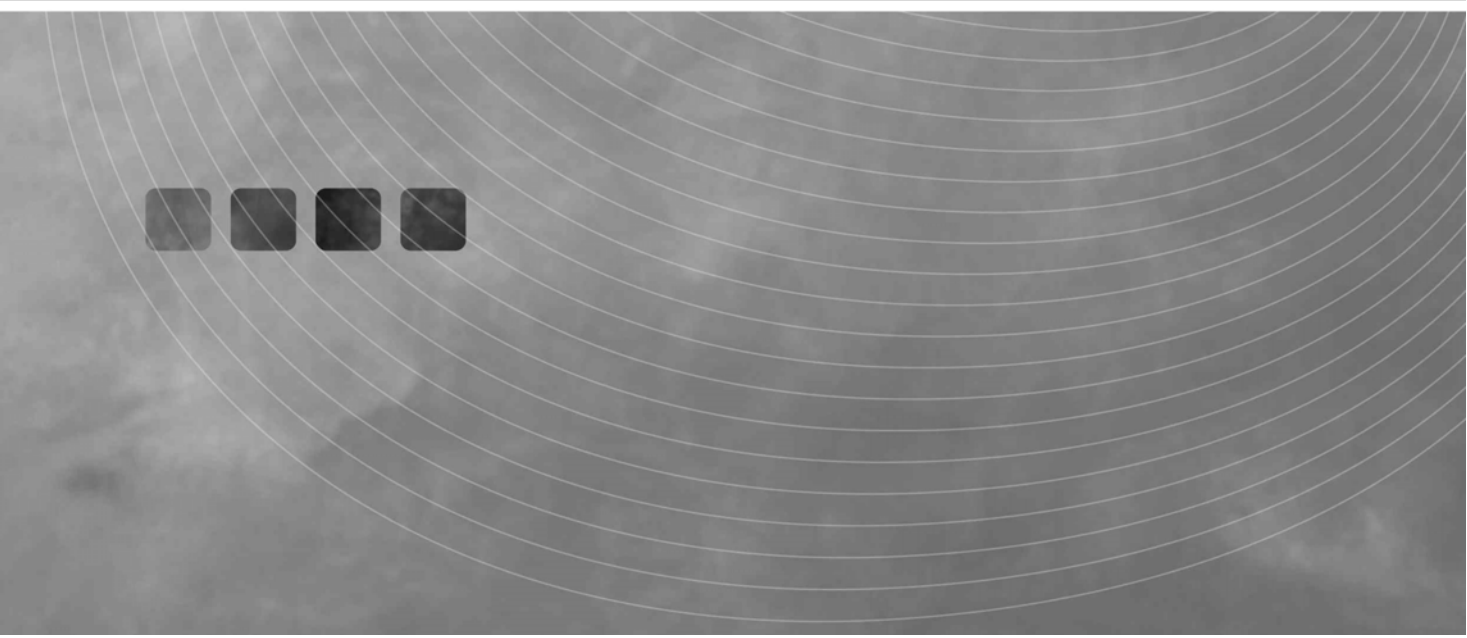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0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 | | | |
|----|--------------|-----------|-------|
| 제정 | 1996. 12. 23 | 농림부예규 | 제189호 |
| 개정 | 1997. 11. 25 | 농림부예규 | 제192호 |
| 개정 | 1999. 1. 20 | 농림부예규 | 제197호 |
| 개정 | 1999. 4. 20 | 농림부예규 | 제202호 |
| 개정 | 1999. 6. 30 | 농림부예규 | 제204호 |
| 개정 | 1999. 10. 1 | 농림부예규 | 제208호 |
| 개정 | 2001. 8. 31 | 농림부예규 | 제214호 |
| 개정 | 2002. 10. 9 | 농림부예규 | 제219호 |
| 개정 | 2005. 9. 1 | 농림부예규 | 제223호 |
| 개정 | 2006. 1. 12 | 농림부예규 | 제225호 |
| 개정 | 2007. 8. 16 | 농림부예규 | 제232호 |
| 개정 | 2009. 8. 24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 제 16호 |
| 개정 | 2009. 11. 28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 제 24호 |
| 개정 | 2012. 7. 18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 제 43호 |

1. 총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처리기관

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조사 총괄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대상 농지의 결정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의 통지
-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
- ⑤ 법 제12조에 따른 처분명령의 유예
- ⑥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나. 읍장·면장·동장

- ①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한국농어촌공사 조사협조)
- ②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의 조사
- ③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 ④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 ① 읍·면·동장의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의 접수 및 매수

【업무처리단계 및 처리기관】

| 업무처리단계 | 처리기관 |
|--|--|
| 1. 농지의 이용실태 등 조사 ① 농지이용실태조사 ② 처분대상농지조사 ③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 총괄 : 시·군·구 실사 : 읍·면·동 협조 : 한국농어촌공사 |
| 2.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① 처분대상농지의 구분 ②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 읍·면·동 시·군·구 |
| 3.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 | 시·군·구 |
| 4. 농지처분명령의 유예 결정 | 시·군·구 |
| 5. 처분명령 ① 처분의무 이행여부 조사 ② 처분명령서 송부 | 총괄 : 시·군·구 실사 : 읍·면·동 시·군·구 |
| 6.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시·군·구 |

II. 농지이용실태 등 조사

1. 조사대상

가. 농 지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의 농지 등은 읍·면의 조사인력을 감안하고, 향후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걸로 판단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 등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통지 대상이 됨.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저당기관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한 담보농지
- ③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한계농지
- ④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농지
-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농지
- ⑥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 ⑦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 ⑧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2년 이상 계속 성실하게 자경했다고 해당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농지
- ⑨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단, 농지소재지 이외의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농지는 제외]

※ 농지의 취득 시점

- ① 취득원인이 상속·유증(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 ② 상속이나 유증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신청 접수일

나. 농업법인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2.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 : 매년 9월 1일

나.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내용 : 전년 9월 1일 ~ 당년 8월 30일(1년간)
중 농지이용실태

다. 조사기간 :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90일간)

라. 수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작물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가. 조사담당기관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 : 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조사 : 읍장·면장·동장(한국농어촌공사 조사협조)

나. 조사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기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조사계획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반』 구성, 조사대상 목록, 조사 일정, 담당기관(한국농어촌공사 참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적 목적의 취득농지 실태조사 등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절차는 정기조사와 같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인력 및 예산확보, 타부서 협조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방법

(1) 농지이용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를 확인한다.
- 조사대상 목록은 『토지대장전산정보자료』 및 『취득자격증명발급 대상자』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불법 관행 임대·사용대 등 투기목적 취득농지 실태 파악을 위해 중점 조사 대상 목록을 농지원부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집중 조사한다.
 - ※ 타 시·군 및 타 시·도 거주자 명의의 소유농지는 전부 실태조사 목록에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중점조사 하여야한다.
-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 중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표(별지 제1호서식)를 리·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읍·면·동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가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속농지, 토지거래허가지역 농지 등)

(2) 처분대상농지조사

- 읍·면·동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구별한 후 이를 현지 확인하여 처분대상농지조사 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3)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중 조사 기준일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
-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표는 법인별로 작성한다.

(4) 증거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읍·면·동장은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처분의무 통지 등 사후조치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촬영한 사진기록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실제 농업경영 여부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이장 등이 확인하는 확인서를 확보한다.

※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음

4. 조사사항

가. 농지이용실태조사

- ① 농지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 ② 경작현황에 관한 사항

나. 처분대상농지조사

- ① 농지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 ② 경작 또는 재배 작목에 관한 사항
- ③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 ① 출자에 관한 사항
- ② 법인의 대표사원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④ 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

5. 농지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의 구분기준

가. 농지이용현황

(1) 농작물 경작 : 조사대상 기간동안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등 농작물을 경작 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시설 작물을 재배하거나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해당 지역의 영농관행, 농지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진정한 영농의사 없이 부실 경작하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관계인 증언 등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영농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점검

(2) 다년생식물 재배 : 조사대상 기간 동안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거나 재배하고 있는 농지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해당하나, 정원조성 등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3)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 영 제2조제3항2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축사와 그 부속시설은 '07.7.4 이후에 설치한 경우,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은 '12.7.18 이후에 설치한 경우에 한함

(4) 휴 경 : 조사대상 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농지

(5) 빈 축사 : 조사 당시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축사와 그 부속 시설

(6) 전용(타용도 사용)확정 농지 :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확정된 농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항에

다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②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③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나. 경작현황

(1) 자경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경영(법 제2조제5호)

- 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농업경영에 투입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것으로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농업인이 행하는 농업경영(전업농업인)
- ② 농업인이 해당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겸업농업인)
- ③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함으로써 행하는 농업경영

(2) 임대 또는 사용대

- ① 임대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 ② 사용대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 임대 또는 사용대는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판단한다.

(3) 부분위탁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농지소유자가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 (4) 전부위탁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과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부분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경영

Ⅲ.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1.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나,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라 취득한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 그 농지

※ 정당한 사유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한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한 경우 등(영 제9조제1항)

다.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그 목적 사업인 시험지·실습지·연구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라.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지

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농지

※ 이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 바. 농림수산물부장관과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
- 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
- 아. 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 자. 법원의 판결, 검사의 처분 등에 의하여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 차.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의 해당 농지
- 카.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업무집행사원(이사) 중 농업인이 1/3 미만으로 된 경우

2. 휴경, 임대(사용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가.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영 제9조제1항제3호)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농작물경작에 착수할 수 없는 시기에 농지를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 농산물 생산자들이 해당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부·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또는 생산자들간의 자율적 협약 등을 체결하여 휴경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곤충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곤충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나.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영 제9조제1항제1호)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 농지법 제23조 제1호·제6호·제7호에 따라 임대·사용대 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의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은퇴하려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농지로서 거주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 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법 제9조, 영 제8조)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월 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을 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3.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가.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처분대상 농지 조사 및 농업법인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는 농지를 구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읍장·면장은 처분대상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에 한정한다)·군수에게 송부한다.
- 읍장·면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 받은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에 한정한다)·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시의 시장에 한정한다) 또는 구청장은

처분대상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나.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

-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영농 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4. 농지의 처분통지

가. 농지의 처분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처분의무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 농지
 2. 처분의무 발생 사유
 3.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4. 이의제기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

나. 주소불명자에 대한 농지의 처분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시청·군청·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5. 이의제기 및 그 처리

가.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는 당초 조사를 담당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의제기의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농지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통지를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처분의무의 확정 및 효력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처분의무통지가 철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확정된다.
- 처분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취소(처분명령유예 후 처분의무가 소멸된 경우 포함)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Ⅳ.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

1. 처분명령

가. 처분명령 대상

-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나.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는 처분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명령의 유예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의 소유자 및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 처분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한다.

마. 처분기간

- 처분기간은 처분명령일부터 6월로 한다.

바. 처분명령의 효력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은 처분에 관한 명령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75조제3항)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 ②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 다만, 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은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안됨

※ 처분명령기간 경과 전에 해당 농지의 매매계약 등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일 전에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명령기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

나. 이행강제금의 산출

- 이행강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이행강제금 =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20/100 × 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등은 다음 예에 의한다.
 - 이행강제금부과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되어 있는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예) : 2002. 1. 1이후에도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전까지는 2001년도에 이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같이 처분대상농지를 특정하지 않고 소유 농지 중 일정면적을 처분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한 경우에는 그 소유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계고 및 청문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와 부과비율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 대한 계고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결정하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의절차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75조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마. 이행강제금의 귀속

- 이행강제금은 이를 부과·징수한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바. 이의제기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V. 농지의 매수 및 처분

1. 농지의 매수

가. 농지의 매수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법 제11조제2항, 영 제1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라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매수가격의 산정

-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다.
-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농지의 매도

-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 때에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방법·절차 및 지원에 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VI.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의무(처분명령 포함)가 부과된 농지

- 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 시
 -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된다.
 -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영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
 - 다만, 해당농지가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수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 농지처분의무 또는 명령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철회
 - 처분의무 및 명령 기간이 경과하여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에 한하여 이를 징수
- 나. 처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처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행위를 행정청에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당시에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사위

유무를 조사하여 사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문 결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 농지소재지 등 농지현황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는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없다

*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농지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농지처분대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의 수탁대상 농지에서 제외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처분대상농지에 대하여 처분 및 자경·매도위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 처분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행 하는지 여부, 매도위탁농지의 매도여부 등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는 소멸된다.

Ⅶ. 보고 · 기타

1.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76조에 따라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익년 4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익년 4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조사 외에 수시·특별 조사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농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결과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영 제76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매년 농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익년 2월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읍·면·동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청과 해당 읍·면·동의 인력·기능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군·구와 읍·면·동간의 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각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농지원부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지이용실태조사표

조사지역 : 시 · 구 · 읍 · 면 리 · 동

| 일련 번호 | 농지의 표시 | | | 취득원인 및 취득목적 | 취득자 격증명 발급일 | 취득일 | 소유자 (주소,성명) | 이용 현황 | 경작 현황 | 경작자 | 처분 대상 |
|----------|--------|----|-----------|-------------------|-------------------|-----|----------------|----------|----------|-----|----------|
| | 지번 | 지목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자 : 직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처분대상농지조사표

| | | | | | | |
|-------------|---|-----------|-------------------|--|--------------|----|
| 농지의 표시 | 시·구·군 읍·면·동 리 | | | | | |
|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
| 농지의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직 업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영농거리 | km |
| 농지취득 원 인 | 농지취득 목 적 | | 취득자격 증명 발급일 | | 농 지 취 득 일 | |
| 농지이용 현 황 | 이용현황 | | | | | |
| | 경작현황 | | | | | |
| | 농업경영 계획이행 여 부 | | | | | |
| | 특기사항 | | | | | |
| 조 사 공 무 원 | 직 성 명 (인) | | | | | |
| 결 정 | <input type="checkbox"/> 처분대상 농지임 <input type="checkbox"/> 처분대상이 아님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표

| | | | | | | | |
|----------------------------------|-----------------------------|---|-----------------------------|------|-------|-------|--|
| 법인의 표시 | 명칭 | | | 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법 인 개 황 | 대표사원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농업인여부 | | | | | |
| | 출자에 관한 사항 | 출자자 | 출자액 | 구성비 | *특기사항 | | |
| | | 합계 | | | | | |
| 농업인 | | | | | | | |
| 비농업인 | | | | | | | |
| 이 사 (업무집행 사원)에 관한 사항 | 이사(업무집행사원)의 수 | | | | 인 | *특기사항 | |
| | 농업인인 이사(업무집행사원)의 수 | | | | 인 | | |
| | 비농업인인 이사(업무집행사원)의 수 | | | | 인 | | |
| 정관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형태 | <input type="checkbox"/> 합명 <input type="checkbox"/> 합자 <input type="checkbox"/> 유한 <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 | | | | |
| | 주목적 사업 | | | | | | |
| 소유농지(㎡) | 계(㎡) | | | 논 | 밭 | | |
| 조사공무원 | 직 성 명 (인) | | | | | | |
| 농지소유자격 | <input type="checkbox"/> 있음 |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
| 제 호 <h2 style="margin: 0;">농지처분명령서</h2> | | | | | | | |
| 1. 성 명 : (명 칭) | | | | | | | |
| 2.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3. 주 소 : | | | | | | | |
| 4. 처분대상농지 및 그 면적(아래 농지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중 m ²) | | | | | | | |
| 소 재 지 | | | | 지 번 | 지 목 | 면적(m ²) | 비 고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처분기간 및 기한 | 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간) | | | | | | |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안내사항 | | | | | | | |
| 1. 이 명령서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6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2.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별지 제5호서식]

()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1.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가. 사유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명/㎡)

| 시·군 | 조사대상 | 계 | 임대 | 사용대 | 위탁경영 | 휴경 | 기타 |
|-----|------|---|----|-----|------|----|----|
| | | | | | | | |

- 사유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의 「계」 란이 거주지별, 직업별 농지처분의 무통지 현황의 「계」 와 일치

- 청문절차 후 최종적으로 농지처분의무 통지한 인원, 면적을 기재

나. 거주지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명/㎡)

| 시·군 | 총계 (①+②) | 관내 (시·군·구) (①) | 관외(외지인) | | | |
|-----|-------------|----------------------|---------|------------------|----------------|----|
| | | | 소계(②) | 자시·도 중 타시·군·구 | 타시·도 (서울제외) | 서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다. 직업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명/㎡)

| 시·군 | 계 | 자영업 | 농업 | 회사원 | 공무원 | 가사 | 무직 | 기타 |
|-----|---|-----|----|-----|-----|----|----|----|
| | | | | | | | | |

2. 처분명령유예 현황

가. 사유별 처분명령유예 현황

(단위 : 명/㎡)

| 시·군 | 당해 연도 처분명령 유예통지 현황 | | | | | |
|-----|--------------------|----|---------------|----|-------------|----|
| | 계 |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중 | | 매도위탁 계약체결 중 | |
| | 인원 | 면적 | 인원 | 면적 | 인원 | 면적 |
| | | | | | | |

* 당해 연도에 처분명령유예를 통지한 실적 작성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처분명령이 유예된 실적 작성

210mm×297mm[백상지 120g/㎡]

나. 처분명령유예농지 현황

(단위 : 명/㎡)

| 시·군 | 처분명령 유예통지 현황 | | | | | | | | | | |
|-----|--------------|-----|---------------|-----|-----|-----|------|-----|--------|-----|--|
| | 계 | |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 중 | | 처 분 | | 처분명령 | | 처분의무소멸 | | |
| | 인 원 | 면 적 | 인 원 | 면 적 | 인 원 | 면 적 | 인 원 | 면 적 | 인 원 | 면 적 | |
| | | | | | | | | | | | |

- * 당해 연도 현재 처분명령유예중인 농지의 전체 실적 기준 작성
- * 처분의무소멸 : 처분명령 유예를 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3년동안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3. 처분명령현황

(단위 : 명/㎡)

| 시·군 | 당 해 연 도 처 분 명 령 | | | | | | | |
|-----|-----------------|-----|------|-----|--------|-----|------|-----|
| | 총 계 | | 처분실적 | | 처분이행 중 | | 처분철회 | |
| | 인 원 | 면 적 | 인 원 | 면 적 | 인 원 | 면 적 | 인 원 | 면 적 |
| | | | | | | | | |

- * 당해 연도에 처분명령 실적 작성
 1. 처분실적 : 당해연도 처분명령 후 농지를 처분한 실적
 2. 처분철회 : 당해연도 처분명령 후 이의제기 등으로 처분을 철회한 실적

210mm×297mm[백상지 120g/㎡]

4.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가. 총괄

(단위 : 명/㎡/천원)

| 시·군 | 이행강제금부과 (a+b) | | | 이행강제금 징수(a) | | | | | | | | | 비송사건처리 (b) | | | |
|-----|------------------|----|----|-------------|----|----|-----|----|----|------|----|----|---------------|----|----|--|
| | | | | 계 | | | 징수중 | | | 징수완료 | | | | | | |
|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도별 부과한 누계 실적
- * 징수중 : 이행강제금 부과액(누계)중 당해 연도까지 미납액
- * 징수완료 : 당해연도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액중 징수한 전체 실적
- * 비송사건 :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한 경우

나.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단위 : 명/㎡/천원)

| 시·군 | 총계 | | |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당해연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
|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 내역

(단위 : 명/㎡/천원)

| 시·군 | 총 계 | | |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당해연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
|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인원 | 면적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5.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농지 이용실태 조사 현황

가. 목적외 사용 사유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 시·군 | 조사대상 | | 조 사 결 과 | | | | | | |
|-----|------|--------|---------|--------|----------|-------|-----|-----|-----|
| | 필지수 | 면적 (㎡) | 목적대로 사용 | 목적외 사용 | | | | | |
| | | | | 소 계 | 임대 (사용대) | 위탁 영농 | 휴 경 | 전 용 | 기 타 |
| | | | | | | | | | |

나. 피처분통지 기관별 목적외 사용 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

| 피처분통지기관명 (대표자) | 처분통지면적 | 처분통지사유 | 통지일자 | 비 고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left: 20px;"> 건수 </div>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다. 피처분통지 기관별 미취득(미등기)농지현황

| 피처분통지 기관명(대표자) | 발급일 | 미취득 농지 | | | 취 득 목 적 | 농 지 상 태 |
|-------------------|-----|--------|-----|-------|------------|------------|
| |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농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상황

(단위 :명/㎡/천원)

| 지사별 | 매 수 청 구 | | 매 수 | | | 매 도 | | |
|-----|---------|-----|-----|-----|-----|-----|-----|-----|
| | 건 수 | 면 적 | 건 수 | 면 적 | 금 액 | 건 수 | 면 적 | 금 액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7호서식]

| | |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제 호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div> | | | | | | | |
| 1. 성 명 : (명 칭) 2.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3. 주 소 : 4. 처분의무통지내용 ① 처분의무통지근거 : ② 처분대상 농지 및 그 면적(아래 농지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중 ㎡) | | | | | | | |
| 소 재 지 | | | | 지 번 | 지 목 | 면적(㎡) | 비고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③ 처분의무기간 : 5. 처분명령유예 사유 : 6. 처분명령유예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년) | | | | | | | |
| 「농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명령을 유예함을 통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div> | | | | | | | |
| 안내사항 | | | | | | | |
| 1.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처분명령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농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가 유예된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가 소멸됩니다. 2. 이 통지서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매도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처분대상농지 처리현황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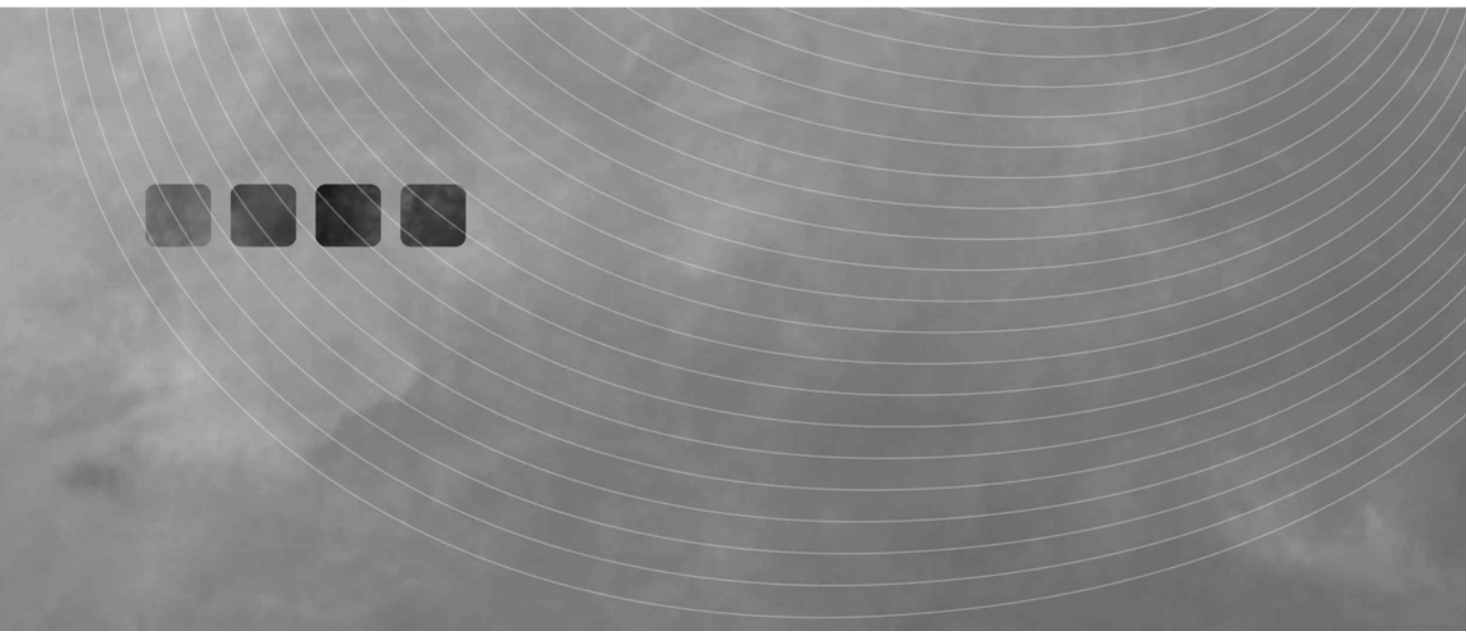
(처분통지년도 : 년)

| 연번 | 소유지현황 | | 농지현황 | | 처분내역 | | | 처분진행상황 | | | | 처분결함 | | | | 처분일자 | 관할법원 이송일자 (회분) | | | |
|----|------------------|----|-----------|-----|-----------------|-----------------|----------|------------------------------------|--|------------------------------------|----|------------------|------------------|------------------|------------------|------|----------------------|--|--|--|
| | 성명 (생년 월일) | 주소 | 농지 소재지 | 취득일 | 취득 면적 (㎡) | 처분면 적 (㎡) | 처분사 유 | 처분 통지 일자 (. .) | 처분 명령 유예 일자 (. .) | 처분 명령 일자 (. .) | 부과 | 1회 일자 (금액) | 2회 일자 (금액) | 3회 일자 (금액) | 4회 일자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 | | | |
|----|--------------|-----------|--------|
| 제정 | 1997. 4. 22 | 농림부훈령 | 제897호 |
| 개정 | 2001. 1. 20 | 농림부훈령 | 제1060호 |
| 개정 | 2002. 8. 26 | 농림부훈령 | 제1110호 |
| 개정 | 2005. 1. 18 | 농림부훈령 | 제1189호 |
| 개정 | 2005. 8. 22 | 농림부훈령 | 제1207호 |
| 개정 | 2006. 3. 22 | 농림부훈령 | 제1237호 |
| 개정 | 2007. 9. 4 | 농림부훈령 | 제1281호 |
| 개정 | 2008. 5. 18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제 9호 |
| 개정 | 2008. 6. 10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제 21호 |
| 개정 | 2009. 8. 24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제103호 |
| 개정 | 2009. 11. 28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제177호 |
| 개정 | 2010. 12. 30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제234호 |
| 개정 | 2012. 7. 18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제310호 |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보전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제1호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의 부지

3. 제1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해당축사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및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다. 곤충사육사와 해당 곤충사육사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진입로, 사육 용기 세척 시설 및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라.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② “다년생식물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사실상 농지”란 제1항에 따른 농지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이 아닌 토지를 말한다.(농지 개량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④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⑤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⑥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을 말한다.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 삭제<2009.11.28>

제2절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제4조(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의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작성·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 소요액 및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2. 지적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3. 지형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수로 등 대체시설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표시
 4. 피해방지계획서 :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
 -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 나. 토사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 다.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계획
 - 라. 그 밖에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계획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6. 삭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착오 기재되는 등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농지면적등 확인 및 허가신청서 송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기 전에 동 신청서 기재 사항 및 내부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용대상농지의 지목별 면적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는지 여부
2. 사실상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부지의 누락여부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구 또는 동 사업 시행예정지구 편입여부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관리지역의 편입여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함에 있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오염물질의 배출우려가 있거나 사실상 농지의 면적 등이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권자(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전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 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기 위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처리기준) ① 관할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해당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해당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업기반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6. 전용하려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심사의견서를 참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사업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농지의 전용) ① 시행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전용허가를 신청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의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용허가 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철저한 보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농지전용허가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 별표 1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도시계획재정비 등)의 경우 : 별표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농지부서에서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적정하게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및 농지전용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농지전용협의요청 서류의 확인 및 심사와 심사결과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농지전용신고) ① 시행령 제36조 별표 1에서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수입액이 해당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 ② 신고수리권자는 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으며, 농업인 주택은 무주택인 농업인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③ 신고수리권자는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일 이전 5년간 해당시설의 부지로 신고전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5년간의 신고면적과 신고하고자 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9호까지 면적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신고수리권자는 신고자로 하여금 가급적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3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

- 제11조(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대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
 2.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사업장의 인근에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3.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4.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
 5.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3항에 일정기간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 5년 이내
2.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3년 이내

④ 제1항에서 “복구”란 농지의 경작여건을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기전과 같거나 더 양호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12조(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를 준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복구계획서 : 사용할 흙의 종류 및 매립·성토의 높이와 취토원의 소재지(복구설계서 첨부)
 - 나. 복구비용명세서 : 산정근거(사용할 흙의 수량, 단가, 운반비 등) 및 거래실례가격
2. 대상농지는 사업내용과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복구비용이나 복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나 협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가증 등에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명시하여 일시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및 복구의 기한 (영농기 도래전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나. 복구의 방법 및 정도
 - 다.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사항
5.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복구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복구비용 예치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조사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농지가 허가(협의 포함)신청할 때 제출한 복구계획서와 허가시 부여한 조건에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당초 제출한 복구계획서와 허가시 부여한 조건에 적합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차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기재 내용 및 심사사항 등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사후관리

제15조(허가·신고조건 이행여부 조사 등) ① 관할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허가·신고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농지전용의 협의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거친 농지에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의요청기관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초의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일 것
2.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3.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관할청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전용허가·신고증 또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관련 인·허가증 등에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감면비율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협의

제17조(협의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의 지정·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지정·변경(이하 “도시관리계획변경등”이라 한다)의 협의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가 1ha 이상 편입되는 경우 : 장관
2.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가 20ha 이상 편입되는 경우 : 장관
3.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가 1ha 미만 편입되는 경우 : 시·도지사

4.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가 20ha 미만 편입되는 경우 : 시·도지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

제18조(협의서류 작성)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의 협의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종류·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협의 : 별표 3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협의 : 별표 4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협의 중 도시지역 확장의 경우 : 별표 5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협의 중 관리지역 세분화의 경우 : 별표 6

제19조(첨부서류의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등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부서로 하여금 제18조에 따른 서류가 적정하게 첨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계서류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지분야 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권자가 장관일 경우에는 시·도지사(농지부서)가 관계서류를 재확인하고 농지분야 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농지분야 협의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2. 사업시행시 인근농지 또는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4. 진흥지역 농지인 경우 해당농지 이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유무

제6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급

제20조(사실상 농지등에 대한 부과기준 적용) ① 사실상 농지는 주재배

작목에 따라 답 또는 전으로 분류하고, 과수원은 전으로 분류하여 보전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부과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보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1조(농지전용협약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 ①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등이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가.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농지전용협약요청서에 지번별 지적 및 전용면적을 기재한 전용농지조서와 전용목적·사업시행자·사업기간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전용협약을 요청한다.

나. 관할청은 협의요청기관이 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인가 등을 하도록 명시하여 농지전용을 협의한다.

다.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인가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관할청은 다목에 따른 인가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시행령 제47조부터 제48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부과결정하고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에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포함)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 중 군수의 현지조사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또는 공원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가.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전용협의요청서에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나. 관할청은 보전부담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별표 9의 도시지역등내 농지전용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요령을 송부한다.
- 다.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입을 조건으로 도시계획 또는 공원계획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시지역등의 전용예정 농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용예정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허가등의 취소·변경 또는 철회를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전용농지의 위치·면적(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 전·답 구분)·전용목적, 개별공시지가, 전용자의 주소·성명, 허가일 등을 명기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마. 라목에 따라 허가 등의 사실을 통지받은 관할청은 보전부담금을 부과결정하고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에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바. 보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의 부과기준 및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사. 공원계획이 결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점·사용허가 신청면적 등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가 보전부담금을 부과결정한다.

③ 관할청이 협의요청기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협의요청기관이 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인가증이나 허가증 등을 내어주는

것을 협의의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공사는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부과결정서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이를 보완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청은 시행령 제3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부담금 등을 납입한 후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농지전용신고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감면) ① 시 행령 제36조 별표 1의 농지전용신고대상자가 신고대상시설을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지역의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불구하고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전부담금은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20호에 따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용도구역안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20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전부담금 자진납부) 관할청이 농지전용자로부터 보전부담금의 자진 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사로 부터 통지번호를 부여받아 자진납부서에 이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즉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전부담금 납입통지) ① 공사는 관할청에서 통보한 보전부담금의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대상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보전부담금의 부과누락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협조를 받아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확인결과 부과누락 농지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에 이를 통보한 후 관할청의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정정에 따라 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라 부과 누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을 정정하고,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사가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재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에 주소를 조회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농지전용자의 주소변경사실 등을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제25조(납입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① 시행령 제49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 연장은 당초 납입기간의 만료일전까지 신청한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농지전용허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등을 포함하며 이하 “농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납입기간이 경과된 보전부담금의 납입) ① 농지전용자는 납입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과실로 인하여 당초 납입기한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납입의무자가 기한 경과 후에 납입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결정을 한 때에는

당초의 부과결정 사항을 취소하고 재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재부과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제28조(보전부담금의 납입과 허가등의 효력) ① 보전부담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등의 효력은 보전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농지전용허가증 등은 보전부담금을 완납한 후에 내어주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목적사업 착수 전에 납입하여야 할 해당금액 납입영수증 및 보증서를 확인한 후 농지전용 허가증 등을 내어줄 수 있다.

③ 보전부담금 등을 납입한 자(이하 “납입자”라 한다)가 납입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공사는 신청인과 납입자의 관계를 확인한 후 납입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보전부담금 조달방안 확인) 관할청이 농지전용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조달방안 제출여부를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소요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신청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30조(보전부담금과 전용면적 산정시 단수처리) 보전부담금의 합계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31조(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관할청이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사에 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그 산출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입자와 환급대상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관할청에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변경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관할청이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 등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보전부담금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청이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해당 농지의 상태가 종전과 같거나 더 양호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보전부담금 업무추진) ① 관할청과 공사는 보전부담금의 부과, 징수, 환급, 결손처분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보전부담금 수납회계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직원 중에서 수납담당임원 또는 수납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보전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보전부담금 통지 및 수납 등 소송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및 결손처분

제33조(체납대장 등 작성 및 관리) ① 공사는 보전부담금미납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관할청은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미납상황 통보를 받은 즉시 체납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제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자 별로 그 사유를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1건당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납입의무자를 대상으로

고액체납자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해당 체납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의 모든 관계서류를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이 완결될 때까지 분기 1회 이상 체납정리 추진사항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제34조(체납관리에 관한 협조 등) ① 관할청은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보전부담금 체납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체납처분, 협의(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이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허가 등의 취소 등 조치를 함에 있어 공사에 대해 농지상태조사, 법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① 관할청은 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가 시행령 제49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에 정하여진 납입기한 내에 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9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인 농지전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통지번호 및 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의 성명
2. 전용농지의 소재지 및 전용면적
3. 허가취소 사유
4. 그 밖의 허가취소와 관련된 사항

제36조(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38조제10항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할청의 부책임자(단, 농림수산식품부 및 특·광역시, 도는 담당국장으로 한다)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농지부서 공무원 3인 이내, 국세·지방세 관계부서 공무원 2인 이내, 공사의 체납담당직원 1인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회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37조(결손처분) ① 관할청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을 조사한 결과 법 제38조제10항 및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손처분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개정 2010.12.30)

제38조(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①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결손처분표(별지 제12호서식)

2.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서식)

3. 그 밖의 결손관계 서류

② 결손처분은 제1항의 구비서류와 심의회의 심의안(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정확과 신중을 기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 서식)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15호서식) 사본

2.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16호서식) 사본

3. 결손처분표 사본

4. 그 밖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서류

④ 관할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결손처분결과에 대하여 공사가 사실확인 조회를 요청할 경우에 관할청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관할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결손처분 결과에 대하여 보전부담금 징수관리시스템 전산자료에 등재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관할청별 결손 처분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결손처분의 취소 등) ① 관할청은 결손처분된 건에 대하여 소멸시효 만료기간까지 매 분기마다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결손처분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제41조(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의 우선사용) ① 관할청은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급 받은 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연수비, 인쇄·물품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급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농지관리업무의 행정사무전산화 지원 및 교육·연수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지급기준) 수수료는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로 하되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한 관할청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가. 농림수산식품부 부과 : 시·도 50%, 시·군·자치구 50%
 - 나. 시·도 부과 : 시·도 50%, 시·군·자치구 50%
 - 다. 시·군·자치구 부과 : 시·군·자치구 100%
2. 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 가. 납입액이 4천억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2%
 - 나. 납입액이 1조원 이상일 경우 납입액의 1%
 - 다. 납입액이 4천억원과 1조원의 중간에 있을 경우 해당 납입액에 대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 금액

제43조(수수료 지급 및 결과통보) 공사는 당월 수수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청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수수료 산출내역(별지 제17호서식) 및 수수료 지급현황(별지 제18호서식)을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농지전용허가 등의 결정기관 및 협의요청기관의 농지전용관련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1. 적용대상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실시계획, 조성계획 등)되는 협의
-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내 농지전용협의를 <별표 2>에 따라 작성

2. 신청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 제출책임 | 서류명 | 근거 | 작성방법 | 비고 | | |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 | ①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 | 규칙 제26조 (또는 제30조) |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작성 | ○ 전용협의시는 생략 | | |
| | ②사업계획서(도시관리 계획결정안 요약등) | 규칙 제26조 | | | | |
| | ③소유권(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 | | | | |
| | ④지적도(또는 임야도) 등본 | 〃 | | | | |
| | ⑤농지전용협의도 * 필요시 도시관리 계획결정 도면 등 | 〃 | | | 규정 제4조, <별표 7>-2 에 의하여 작성 * 필요시 상세도(1/5,000) 작성 | ○ 전용허가(협의)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생략가능 |
| | ⑥피해방지계획서 | 〃 | | | ○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 예상되는 피해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종류별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한국농촌공사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드시 명시 - 농로·수로가 차단될 경우 대체시설 설치계획도면(⑤지형도에 표시) 오페수가 배출될 경우 오페수처리계획도면 첨부 | ○ 사업시행자가 작성, 날인 |

농지관련 규정집(훈령·예규·고시) ▶▶▶▶

| 제출책임 | 서 류 명 | 근 거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시장·군수·구청장 | ⑦전용대상농지의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규칙 제28조 | ○규칙 제28조 별지 제17호 서식 | ○농지부서에서 확인 |
| | ⑧농지전용심사의견서 | 영 제34조, 규칙 제30조 | 규칙 서식 제16호에 의하여 작성(의견 결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 장관이 허가권자인 경우 도지사심사의견서 추가 |
| | ⑨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인 경우 지사장의 견서 | 규칙 제28조 |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 관리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
| | ⑩사실상농지편입 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 | | 농지부서에서 확인 |
| | ⑪농업생산기반 시설부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관계부서 의견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 시설부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 의견첨부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 보용배수로유자농로방 조제제방 등 | 기반조성부서에서 확인·날인 |
| | ⑫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⑬부과명세서 | 영 제46조 | <별표 7>-1-나에 의하여 작성 규칙서식 제31호에 의하여 작성 | 기반조성부서에서 확인·날인 농지부서에서 작성 |
| ⑭농지전용협의 의견서 | | ○<별지 제2호서식> 으로 작성 | 농지부서에서 작성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허가(협의)권자인 경우로서 농지전용협의와 농업진흥지역변경 승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별표 5>의 ①, ⑤, ⑦, ⑨, ⑩의 서류 추가제출

※ 신청서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허가권자인 경우는 ①, ⑧, ⑭, ②, ⑤, ④ 등의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함

<별표 2>

도시계획재정비, 도시지역내 도시계획시설결정관련 농지전용협의 신청 서류 및 작성 방법

- (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 (2) 입안자의 입안사유
- (3) 시장·군수 심사의견서
- (4) 시·도지사 종합심사의견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5) 도시관리계획변경(안) * 요약서로 대체 가능
- (6) 도시관리계획변경 도면 1부.(별표 8) * 필요시 위치도(1/25,000 이상) 첨부
※ 농지현황이 표시된 도면 사용
- (7) 농지전용협의도 1부(별표 8) * 필요시 상세도(1/5,000) 작성
※ 단, 농지전용협의 대상지에 도시계획관련 부분은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농지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
- (8)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별 현황

(단위 : ha)

| 구 분 | 기존도시 (A) | 변 경 내 역 | | 재정비 도시구역 (D=B+C) | 계 A+D | 비율 (%) |
|--|-------------|--------------------------|-------------|------------------------|----------|-----------|
| | | 기존도시내의 용도구역 변경 (B) | 신규확장 (C) | | | |
| 계 | | | | | | |
|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 자 연 ○ 생 산 (도시계획시설) · · | | | | | | |

- 주) 1. 신규 확장은 도시지역의 확장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확장이전 기존 도시지역내의 용도 지역만을 변경할 경우는 신규 확장란은 해당없음
2. 녹지지역중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안에 별도 내서 할 것

(9)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지목별 농지편입 현황(주거·상업·공업 및 도시계획시설)

(단위 : ha)

| 구 분 | 총면적 | 농 지 | | | | | | | | | | | | 비농지 | |
|--------|-----|-----|--------|---|---|----|---------|---|---|----|---------|--|--|-----|--|
| | | 계 | 농업진흥지역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농업진흥구역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 | | | 계 | 답 | 전 | 기타 | 계 | 답 | 전 | 기타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주거지역 | | | | | | | | | | | | | | | |
| 상업지역 | | | | | | | | | | | | | | | |
| 공업지역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 | | | | | | | | | | | | | | | |

* 농업보호구역은 ()로 표시

※ 경지정리 면적 및 시행년도 : , 초지편입면적 :

(10)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편입현황

<총 괄>

(단위 : ha)

| 구 분 | 총 면 적 | 농 지 면 적 | | | | | | 비 고 (용도, 사유 등) |
|-----------|-------|---------|--------|------|---------|------|--|-------------------|
| | | 합 계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 |
| 계(a+b) | | | | | | | | |
| 용도지역변경(a) | | | | | | | | |
| 주거지역 | | | | | | | | |
| 상업지역 | | | | | | | | |
| 공업지역 | | | | | | | | |
| 도시계획시설(b) | | | | | | | | |
| 도 로 | | | | | | | | |
| 공 원 등 | | | | | | | | |

<세부편입현황>

(단위 : ha)

| 구 분 | 총면적 | 농 지 편 입 현 황 | | | | | | 비 고 (용도, 사유 등) |
|--------------------------|-----|-------------|--------|------|---------|------|--|-------------------|
| | | 합 계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 |
| 계 | | | | | | | | |
| <용도지역변경> | | | | | | | | |
| (예시)1. ○○마을 (제1종일반주거) | | | | | | | | |
| 2. ○○마을 (제1종일반주거) | | | | | | | | |
| <도시계획시설> | | | | | | | | |
| (예시) 1. 대로 1-1 | | | | | | | | |
| 2. 중로 3-4 | | | | | | | | |

(11) 도시지역내의 인구밀도 (도시계획재정비시만 작성)

| 구 분 | 인 구 (명) | 인구증가율 (%) | 인구밀도(인구/ha) |
|--------------------|---------|-----------|-------------|
| 현 재 | | | |
| 목 표 년 도 (년) | | | |

(12) 피해방지계획서

(13) 농지보전부담금 조달계획(납부 협약서) 각 1부

(14)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내의 농지편입 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지시장 의견서

(15)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16)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현황 : <별표 7>-1-나에 의하여 작성

<별표 3>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협의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 (1) 입안자의 입안사유.
- (2)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의 농지분야 의견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3)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안) 1부. * 요약서로 대체 가능
- (4)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도면 1부. <별표 8을 준용하되 시가화예정용지의 구역표시는 국토해양부 작성지침(직경 10mm 주황색점으로 표시)을 준용>
 ※ 경지정리여부 등 농지상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농지현황이 표시된 도면 사용

(5) 토지편입 일반현황

(단위 : ha)

| 구 분 | 총면 적 | 농 지 | | | | | | 비농지 |
|--|---------|------|------|--------|------|---------|--|-----|
| | | 합 계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 | |
| 합 계 | | | | | | | | |
| 도시화예정용지 (광역도시계획) 또는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기본계획) | | | | | | | | |
| 도시계획시설 | | | | | | | | |
| 기 타 | | |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화예정용지·시가화예정용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치를 결정하지 않고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편입 일반현황 작성 생략 가능

<별첨>

가. 일반현황

- 인구현황 : 기준년도(년) : 천명 → 목표연도(년) : 천명
 - 최근 10년간(~ 년) 평균증가율 : %, 인구밀도 : 인/ha
- 주택보급율(년) : %, 농지비율 : ha/명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전체)

(단위 : ha)

| 계 | 시가화용지 (A) | 시가화예정용지(B) | | | 관리지역 (지구단위) | 보전용지 | 미지정 |
|---|--------------|------------|--------|-------|----------------|------|-----|
| | | 소계 | 기정(당초) | 신규(b) | | | |
| | | | | | | | |

다. 기존 시가화용지 현황(나-(A)와 일치)

(단위 : ha)

| 계 | 도시지역 | |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
|---|------|------|------|---------------|
| | 주거용지 | 상업용지 | 공업용지 | |
| | | | | |

라. 편입농지 현황(나-(B)-(b) 및 보전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과 일치)

<총괄>

(단위 : ha)

| 구분 | 총면적 | 농지현황 | | | | | |
|-------------------------|----------------|------|--------|--|---------|--|--|
| | | 계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경지정리 | | 경지정리 | | |
| 편입전 현황 | | | | | | | |
| 편입 현황 | 계 | | | | | | |
| | 시가화 예정용지(d) | | | | | | |
| | 주거용지 | | | | | | |
| | 상업용지 | | | | | | |
| 공업용지 | | | | | | | |
| 기타 | | | | | | | |
| 보전용지 중 도시계획시설 예정지(e) | | | | | | | |
| 편입후 현황 | | | | | | | |

<시가화예정용지 세부편입 현황, * (d)와 일치 할 것>

(단위 : ha)

| 구분 | 총면적 | 농지면적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밖 | 비고 |
|----|-----------------|------|--------|---------|----|
| |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
| 합계 | | | | | |
| 1 | ○○지구 녹지→주거용지 | | | | |

<시가화예정용지 세부편입 현황, * (e)와 일치 할 것>

(단위 : ha)

| 구분 | 총면적 | 농지면적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밖 | 비고 |
|----|----------------|------|--------|---------|----|
| |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
| 합계 | | | | | |
| 1 | ○○일원 ○○근린공원 | | | | |

<별표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협의 신청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1. 적용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협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의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협의
 - 산업단지 ·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원개발사업 구역 · 기업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촉진지구 및 동예정구역의 지정 · 변경 등
 - ※ 농지전용협의(실시계획 · 조성계획 등 협의)와 도시관리계획변경등 협의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작성
 - ※ 도시지역 확장시는 <별표 5>에 의하여 작성

2. 신청 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 제출책임 | 서 류 명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요청기관 | ①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또는 산업단지등 지구 · 구역지정안)개요서 및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 ○위치 · 목적 · 토지이용계획 · 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과 의견제시에 따른 조치계획포함 - 토지이용계획도면 첨부 (1/5,000 이상 지적도에 작성) |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작성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는 1/25,000로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 * 필요시 위치도 (1/25,000 이상) 첨부 |
| 〃 | ②토지편입현황 | ○<별표 7>에 의하여 작성 | |
| 〃 | ③농지분야협의도 (위치도 검용) | ○<별표 7>-2에 의하여 작성 * 필요시 상세도(1/5,000) 첨부 | 농업진흥지역표시 사항에 대하여 농지 부서 확인 |
| 〃 | ④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관계부서 의견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시설 부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 의견 첨부 - 양수장 · 관정 · 배수장 · 취입보 · 용배수로 · 유지 · 농로 · 방조제 · 제방 등 | 기반조성부서에서 확인날인 |
| 〃 | ⑤초지편입현황 및 관계부서 의견 | ○「초지법」에 따른 초지편입 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첨부 - 초지부분을 상기 ③도면에 표시 | 축산부서에서 확인날인 |
| 농지부서 | ⑥농지분야 협의의견서 |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 | |

<별표 5>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관련 협의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 (1) 도시관리계획변경(안) 1부. * 요약서로 대체 가능
-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농지분야 협의의견서 : <별지 제4호서식>
- (3) 도시관리계획도면 1부. * 필요시 위치도(1/25,000 이상) 첨부
- (4) 농지분야 협의도 <별표 8> * 필요시 상세도(1/5,000) 첨부
 ※농지상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농지현황이 표시된 도면사용
- (5)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편입 여부, 면적, 조성년도
- (6)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내의 농지편입여부(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시 해당)
 - 지사장의 의견서 첨부(편입농지가 있을 경우)
- (7)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관리지역 면적 및 시행년도(<별표 7>-1-나)
- (8)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별 현황

(단위 : ha)

| 구 분 | 용도지역별 면적 | 구성비율(%) |
|---------|----------|---------|
| 계 | | |
| 주 거 지 역 | | |
| 상 업 지 역 | | |
| 공 업 지 역 | | |
| 녹 지 지 역 | | |
| ○ 자 연 | | |
| ○ 생 산 | | |
| . | | |
| . | | |

(8) 확장 예정 도시지역내의 농지편입 현황(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단위 : ha)

| 구 분 | 총 면 적 | 농 지 | | | | | | | | | | | | 비농지 | |
|--------|-------|-----|--------|---|---|----|---|---|---|----|---------|---|---|-----|----|
| | | 계 | 농업진흥지역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 | | | | |
| | | | 계 | 답 | 전 | 기타 | 계 | 답 | 전 | 기타 | 계 | 답 | 전 | | 기타 |
| 계 | | | | | | | | | | | | | | | |
| 주거지역 | | | | | | | | | | | | | | | |
| 상업지역 | | | | | | | | | | | | | | | |
| 공업지역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 | | | | | | | | | | | | | | | |

* 농업보호구역은 ()로 표시
 ※ 경지정리 면적 및 시행년도 : , 초지편입면적 :

(9) 도시지역내의 인구밀도

| 구 분 | 인구(명) | 인구증가율(%) | 인구밀도(인구/ha) |
|--------------|-------|----------|-------------|
| 현 재 | | | |
| 목표년도 (년) | | | |

<별표 6>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 협의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 (1)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농지분야 협의의견서 : <별지 제5호서식>
- (2) 도시관리계획결정(안) 1부.
- (3) 도시관리계획도면 1부.
- (4) 농지분야 협의도
- 가) 총괄도 1부(1/25,000 농지도)
- 나) 세분화 용도지역별 도면 각 1부(1/25,000 농지도)
- 다) 세분화 용도지역별 상세도면 각 1부(1/12,000 내외 농지도)
- ※ 나)와 다)는 전·답·기타농지 구분표시하고,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별 농지상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1부씩 작성
- (5) 관리지역내의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현황
- 가. 편입토지 총괄표

(단위 : ha)

| 용도구역별 | 합 계 | 농 지 | | | | | 비농지 |
|--------|-----|-----------|---|---|-----|------|-----|
| | | 계 경지정리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
| 합 계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답·전·과수원 이외의 구거·제방·농로·유지 등은 기타농지로 분류

나. 용도지역별 편입토지 비율

(단위 : ha)

| 구 분 | 용도지역별 면적 | | 구성비율(%) | |
|------|----------|----|---------|------|
| | 전체 | 농지 | 전체 | 농지 |
| 계 | | | 100% | 100% |
| 계획관리 | | | | |
| 생산관리 | | | | |
| 보전관리 | | | | |

다. 편입토지 세부현황

(단위 : ha)

| 구 분 * 블록 또는 라벨번호 | 합 계 | 농 지 | | | | | | 비농지 | 토지적성등급 비중(%) | | |
|------------------------|-----|-----|---|---|-----|----|-----------|-----|-----------------|-----------|----------|
| | | 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 | 1~2 등급 | | 3 등급 | 4~5 등급 | |
| | | | | | | | | | | | 경지 정리 |
| 합 계(A+B+C) | | | | | | | | | | | |
| 계획관리 소계(A) | | | | | | |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관리 소계(B) | | | | | | | | | | | |
| 5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전관리 소계(C) | | | | | | | | | | | |
| 7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답·전 과수원 이외의 구거·제방·농로·유지 등은 기타농지로 분류

(6) 용도지역 세분화시 적용한 구체적 기준

<별표 7>

토지편입현황 및 지형도 작성방법

1. 토지편입현황

가. 편입토지 총괄표

(단위 : ha)

| 용도구역별 | 합 계 | 농 지 | | | | | 비농지 |
|------------------------------|-----|-----|---|---|-----|------|-----|
| | | 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
| 합 계 | | | | | | | |
| 농업진흥지역 진 흥 구 역 보 호 구 역 |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답·전·과수원 이외의 구거·제방·농로·유지 등은 기타농지로 분류

나.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현황

(단위 : ha)

| 구 분 | 기 시 행 | | 시 행 예 정 | |
|--|-------|-----|---------|-----|
| | 년 도 | 면 적 | 년 도 | 면 적 |
|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발기반정비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 | | | |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을 기재하고, 2.지형도에 구역선 표시
 - 경지정리·발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2. 지형도(위치도 겸용)

- 1/25,000(농지편입면적 10ha 미만시는 1/5,000) 지형도 원도에 작성
- 대상지역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지형도를 조제
 - 크기 : 지형도 원도크기(53×78cm)

농지관련 규정집(훈령·예규·고시) ▶▶▶▶

-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1/25,000 도면상 20cm)까지의 진흥지역을 표시하고 기존 주요시설을 명시
 - 진흥구역은 황색, 보호구역은 녹색으로 채색
 - 구 획 선 : 흑선으로 중간 굵게 표시

- 개발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게 표시하고 농로·수로 등의 대체시설 설치 위치 표시
 -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별표 8>

도시관리계획 도면 작성요령 : 예시도면 참조

- (1) 지형도 중앙에 변경후 용도지역을 표시
 - 용도지역별 개발계획을 색도로 구분표시하고 범례부착
 - 지형도는 1/5,000 또는 1/25,000 축적도 사용(규격은 지형도 원도크기)
 - (2) 변경전 용도지역을 트레싱지에 작성하여 지형도 위에 첨부
 - (3) 도시지역안과 주변의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작성
 - 진흥구역은 황색, 보호구역은 녹색으로 표시
 - (4) 도시관리계획도상에 기존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편입 확장될 경우 용도지역별로 흑선으로 구획선을 구분 표시하고
 - 주거지역 : (1), (2), (3)의 기호로
 - 상업지역 : (가), (나), (다)의 기호로
 - 공업지역 : (A), (B), (C)의 기호로
 - 신설되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 학교후보지, 도로예정지, 유원지 등으로 표시
- } 표시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라벨을 도시관리계획도면상의 여백에 부착
- (5) 도시지역을 확장할 경우 도시관리계획도상에 기존 도시지역과 신규확장편입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 표시(흑선)
 - (6) 반드시 범례를 도시한다
 - (7) 녹지지역이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각종 도시관리계획시설로 편입될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라벨을 작성, 도시계획도의 상·하·좌·우의 여백에 부착

< 라벨예시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 | | |
|---------------|--------|--------|---------|
| 총 면 적 : | ha | | |
| 농지면적 : | ha | | |
| 농 지 내 역 | | | |
| 구 분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 |
| 전 답 과수원 | | | |

< 예시도면 >

(예) ○○도시계획도

○○지역 → 유원지

| | | | |
|---------|------|------|-------|
| A | 총면적 | ha | |
| | 농 지 | ha | |
| 농 지 내 역 | | |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진흥지역밖 |
| | | | |
| 답 | | | |
| 전 | | | |
| 과수원등 | | | |

○○지역 → 주거지역

| | | | |
|---------|------|------|-------|
| 가 | 총면적 | ha | |
| | 농 지 | ha | |
| 농 지 내 역 | | |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진흥지역밖 |
| | | | |
| 답 | | | |
| 전 | | | |
| 과수원등 | | | |

○○지역 → 상업지역

| | | | |
|---------|------|------|-------|
| 나 | 총면적 | ha | |
| | 농 지 | ha | |
| 농 지 내 역 | | |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진흥지역밖 |
| | | | |
| 답 | | | |
| 전 | | | |
| 과수원등 | | | |

○○지역 → 주거지역

| | | | |
|---------|------|------|-------|
| 다 | 총면적 | ha | |
| | 농 지 | ha | |
| 농 지 내 역 | | |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진흥지역밖 |
| | | | |
| 답 | | | |
| 전 | | | |
| 과수원등 | | | |

(신규편입) ○○지역 → 유원지

| | | | |
|---------|------|------|-------|
| ② | 총면적 | ha | |
| | 농 지 | ha | |
| 농 지 내 역 | | |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진흥지역밖 |
| | | | |
| 답 | | | |
| 전 | | | |
| 과수원등 | | | |

○○지역 → 공업지역

| | | | |
|---------|------|------|-------|
| A | 총면적 | ha | |
| | 농 지 | ha | |
| 농 지 내 역 | | |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진흥지역밖 |
| | | | |
| 답 | | | |
| 전 | | | |
| 과수원등 | | | |

○○지역 → 공원

| | | | |
|---------|------|------|-------|
| ③ | 총면적 | ha | |
| | 농 지 | ha | |
| 농 지 내 역 | | |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진흥지역밖 |
| | | | |
| 답 | | | |
| 전 | | | |
| 과수원등 | | | |

(신규편입) ○○지역 → 주거지역

| | | | |
|---------|------|------|-------|
| 라 | 총면적 | ha | |
| | 농 지 | ha | |
| 농 지 내 역 | | |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진흥지역밖 |
| | | | |
| 답 | | | |
| 전 | | | |
| 과수원등 | | | |

<별표 9>

도시지역등내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요령

1.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지법」 제34조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녹지지역등 →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12조 부터 제14조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공원계획이 결정된 지역중 집단시설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등의 전용 예정 농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해당 구역내 농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한 때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결정하여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부담금의 부과를 요청하거나 자진 납부토록 하여 농지형질변경 전에 동 부담금이 납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건축신고·「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공원사업시행 허가, 점·사용허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한 날 또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해당 부담금의 수납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및 군수는 비치된 전용예정 농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5. 해당 구역내에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내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해당 지부장과 사전 협의하여 지부장이 요구하는 사항(장기채 및 미징수 조합비 처리 등)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 지 보 전 관 리 각 서

가. 농지의 위치 및 면적 :

나. 사업목적 :

다. 사업시행자 :

위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체 사업구역내 편입된 농지
계 m^2 (답 : , 전: , 농지개량시설부지 :) 중 금회
사업시행상 필요한(전용한) m^2 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 m^2 에
대하여는 차후 농지전용시까지 계속 농업목적으로 활용토록 선량하게 관리
하겠으며,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추가 농지전용이 필요한 때에는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뿐만 아니라, 관련 농지보전부담금도 관계규정에
따라 납부하겠음을 확약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농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의견서

※ 변경협의시에는 변경사항을 표시하되 면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초·변경·증감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1. 위 치 :
2. 요청기관 :
3. 사업시행자 :
4. 목적 또는 사유 : (예)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승인(인가)
 ※용도지역 : 예시) 도시지역(자연녹지)
5. 토지 편입 현황

(단위 : ha)

| 용도구역별 | 합 계 | 농 지 | | | | | 비농지 |
|----------|-----|-----|---|---|-----|------|-----|
| | | 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
| 합 계 | | | | | |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년도 시행)

6. 입지선정(입안) 사유(사업시행자)
7. 시·도지사(농지부서) 의견
 - 가. 해당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 나. 공사시행시 및 시설물 운영시 인근 농업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내용 및 방지 계획의 타당성

| 피해종류 및 범위 | 방 지 계 획 | 타 당 성 |
|-----------|---------|-------|
| | | |

다. 해당 농지이외의 활용가능한 토지 유무(현황도면 첨부하여 기술)

라. 종합의견

- ※ 변경시는 당초 협의시기, 관련문서번호 등을 표시하고, 사본을 첨부
 ※ 실시계획인가(승인) 등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지정 등 협의시의 관련문서번호 등을 표시하고, 사본을 첨부

○ ○ 시 장 (도지사)

관인

[별지 제3호서식]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관련 농지분야협의 의견서

※ 변경협의시에는 변경사항을 표시하되 면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초·변경·증감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1. 위 치 :
2. 요청기관 :
3. 사업시행자 :
4. 목적 또는 사유 : (예) 2020년○○시도시기본계획 수립
5. 토지 편입현황

(단위 : ha)

| 구 분 | 총 면 적 | 농 지 | | | | | | |
|---|-------------|------|------|--------|------|---------|------|-----|
| | | 농지면적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지역밖 | | 비농지 |
| |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
| 합 계 | | | | | | | | |
| 도시화예정용지(광역도시계획)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도시 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 포함 |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년도 시행)

6. 입안 사유(사업시행자)
7. 시·도지사(농지부서) 의견
 - 가. 해당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 나.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 인근 농업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내용 및 방지 계획의 타당성

| 피해종류 및 범위 | 방 지 계 획 | 타 당 성 |
|-----------|---------|-------|
| | | |

다. 해당 농지이외의 활용가능한 토지 유무(현황도면 첨부하여 기술)

라. 종합의견

※ 변경시는 당초 협의시기, 관련문서번호 등을 표시하고, 사본을 첨부

○ ○ 시 장 (도지사)

관인

[별지 제4호서식]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에 따른 농지분야협의 의견서

※ 변경협의시에는 변경사항을 표시하되 면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초·변경·증감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1. 위 치 :
2. 요청기관 :
3. 사업시행자 :
4. 목적 또는 사유 : (예) ○○도시관리계획(학교,하수종말처리장 등)결정
5. 변경요청내역 : (예) 농림지역 ha, 관리지역 ha →계획관리지역 ha
6. 토지편입 현황

(단위 : ha)

| 용도구역별 | 합 계 | 농 지 | | | | | 비농지 |
|----------|--------|------------------------|---|---|-----|------|-----|
| | | 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
| 합 계 | | | | | |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년도 시행)

7. 입지선정(입안) 사유(사업시행자)
8. 시·도지사(농지부서) 의견
 - 가. 해당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 나. 공사시행시 및 시설물 운영시 인근 농업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내용 및 방지 계획의 타당성

| 피해종류 및 범위 | 방 지 계 획 | 타 당 성 |
|-----------|---------|-------|
| | | |

다. 해당 농지이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 유무(현황도면 첨부하여 기술)

라. 종합의견

※ 변경시는 당초 협의시기, 관련문서번호 등을 표시하고, 사본을 첨부

○ ○ 시 장 (도지사)

관인

[별지 제5호서식]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관련 농지분야협의 의견서

※ 변경협의시에는 변경사항을 표시하되 면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변경·증감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1. 위 치 :
2. 요청기관 :
3. 사업시행자 :
4. 목적 또는 사유 : (예)○○시·군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5. 변경요청내역 : (예) 관리지역 ha → 계획관리 ha, 생산관리 ha, 보전관리 ha
6. 토지편입 현황

(단위 : ha)

| 용도구역별 | 합 계 | 농 지 | | | | | 비농지 |
|--------|-----|-----------|---|---|-----|------|-----|
| | | 계 경지정리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
| 합 계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년도 시행)

7. 입지선정(입안) 사유(사업시행자)
8. 시·도지사(농지부서) 의견
 - 가. 용도지역별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 <계획관리지역>
 - <생산·보전관리지역>
 - 나. 종합의견

※ 변경시는 당초 협의시기, 관련문서번호 등을 표시하고, 사본을 첨부

○ ○ 시 장 (도지사)

관인

[별지 제6호서식]

도시지역등의 전용예정 농지대장

(1) 작성년월일 20 . . .

| 번호 | 위치 | 지번 | 지목 | 면적 | 농지구분 | | | | 도시계획 등 결정내역 | | | | |
|----|----|----|----|----|----------------|----------------|-----------------|---|-------------|----------|----------|----------------|--------------------|
| | | | | | 농업 진흥 구역 | 농업 보호 구역 | 농업 진흥 지역밖 | 계 |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 공업 지역 | 도시 계획 시설 | 공원계획, 관광단지 등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농지전용내역 | | | | | | | | 비고 | |
|--------|----|----------------|---------|------|---------|------|----------|----|-----------|
| 주소 | 성명 | 사업(또는 시설)내역 | 농지보전부담금 | | 농지전용부담금 | | 전용 일자 | | 확인 (인) |
| | | | 금액 | 감면여부 | 금액 | 감면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농지개량시설부지(유지, 구거, 제방, 농로 등)도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본 대장에는 동 시설 부지 내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실제 사용시 (1)과 (2)를 횡으로 작성하여 사용 가능

[별지 제8호서식]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 | | | | |
|--|-------------------|----------|------------|---------------------|------------------|-----|
| 납 입 자 | 성 명 (법인명, 대표자) |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 사 업 명 (전용목적) | | | | 관 할 청 | | |
| 전용대상의 농지현황 | | | | | | |
| 농 지 소 재 지 | 면적 (㎡) | 납입 일자 | 납입액 (계) | 보전부담금 | 가산금 | 환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용 도 | | | | ※ 기록된 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음 | | |
| 특이사항 | 명의변경 | | | | | |
|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농어촌공사사장</p> <p style="text-align: center;">(농지관리기금수입담당임원)</p> | | | | | | |

[별지 제9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대장

(단위 : 원, m²)

| 통지 번호 | 문서 번호 | 납입의무자 | | 전용 목적 | 토 지 소재지 | 전용면적 | | | 고지 일자 | 납입 기한 | 미납 금액 | 미납사유 | 비고 |
|----------|----------|-------|----|----------|------------|---------------------|---------------------|---------------------|----------|----------|----------|------|----|
| | | 주 소 | 성명 | | | 진흥 보호 진흥 답 | 진흥 보호 진흥 전 | 진흥 보호 진흥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268mm(B4형)

[별지 제10호서식]

체납자 관리대장

(단위 : 원, m²)

| 관리번호 | 납입의무자 | | 농지전용현황 | | | | 납입통지현황 | | | 독촉현황 | | 체납금액 | 체납사유 | 체납관리현황 | | | | 체납정리현황 | | | | 비고 | | | |
|------|-------|----|--------|----|-------|------|--------|------|------|------|------|------|------|--------|------|------|------|--------|------|------|------|----|------|----|--|
| | 성명 | 주소 | 지목 | 면적 | 토지소재지 | 전용목적 | 통지번호 | 통지일자 | 납입기한 | 문서번호 | 발부일자 | | | 납입기한 | 납입권고 | 현황조사 | 재산압류 | 기타 | 자진납입 | 허가취소 | 강제징수 | | 결손처분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268mm(B4횡)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 | | | | | | | | | 관할청 | 체납자관리대장번호 | | | | | |
|-------------------|-------------|-----------|-------------------------------|----------|-------------|----------|----------|----------|----------|----------|----------------------------|-------------------|----|-----|-----|-----|
| 납부의무자 | 상 호 (한자) | | | | 법 인 번 호 | | | | | | 체 납 처 분 사 항 | 소 재 조 사 | | | | |
| | 성 명 (한자)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등기부등본발급(법인) | | | | |
| | 주 소 | | | | 전 화 번 호 | | | | | | | 등기부등본발급(공장등) | | | | |
| | 사 무 실 소 재 지 | | | | 전 화 번 호 | | | | | | | 주 식 배 분 조 사 | | | | |
| 2차의무자 | 상 호 (한자) | | | | 법 인 번 호 | | | | | | | 주 소 지 재 산 조 사 | | | | |
| | 성 명 (한자)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본 적 지 재 산 조 사 | | | | |
| | 주 소 | | | | 전 화 번 호 | | | | | | | 거 주 지 수 색 조 사 | | | | |
| | 사 무 실 소 재 지 | | | | 전 화 번 호 | | | | | | | 사 업 장 수 색 조 사 | | | | |
| 주요 거래처 | 매 입 처 | | | | 주 요 | | | | | | | 임 차 보 증 금 유 무 조 사 | | | | |
| | 매 출 처 | | | | 거 래 은 행 | | | | | | | 기 타 재 산 조 사 | | | | |
| 농 지 전 용 및 체 납 현 황 | | | | | | | | | | | | | | | | |
| 농 지 현 황 | | | 전용허가 | | 납입통지 | | 독촉장 발부 | | | 체 납 액 | | | | | | |
| 지 목 | 면 적 | 토지 소재지 | 전용 목적 | 문서 번호 | 허가 일자 | 통지 번호 | 통지 일자 | 납입 기한 | 문서 번호 | 발부 일자 | 납입 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 | ※ 체납과 관련된 제반 근거문서 및 처분일자 등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압류 물품 공매 사항 | 구분 | 차수 | 1 차 | 2 차 | 3 차 |
| | | | | | | | | | | | | 공매일시 | | | | |
| | | | | | | | | | | | | 공매예가 | | | | |
| | | | | | | | | | | | | 공고방법 | | | | |
| | | | | | | | | | | | | 공매방법 | | | | |
| | | | | | | | | | | | 결 과 | | | | | |

(뒷면)

| 체 납 자 재 산 현 황 | | | | | 체 납 자 재 산 압 류 현 황 | | | 압류담당자 | |
|--|-----|-----|-----|-------------------|-------------------|------------|--------|-------|-----|
| 소 재 지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우선채권 순위 및 법적근거 | 압류일자또는 등기년월일 | 문 서 번 호 | 기타조치사항 | 직 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체납정리를 위한 업무추진사항 | | | | | | | | | |
| 주 요 내 용 (추진중인 사항 및 향후 전망) | | | | | 확인년월일 | | 결 재 | | |
| | | | | | | | 담 당 | 주 무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268mm(B4형)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 결 손 처 분 표 | | | | | |
|---------------------------|---------|--------|-------------|--|-----|
| 결 | | | 재 | | |
| 담 당 | 주 무 | 과 장 | 기관장 | 「농지법」 제38조제8항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체 납 자 | | 성명(대표) | |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 | |
| | | 상호(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 사업장주소 | | | |
| 통지번호 | 년 도 | 납입기한 | 체 납 액 | 전용목적사업 | |
| | | | | | |
| 조 사 결 과 | | | | | |
| 구 분 | 조 사 내 용 | 년월일 | 조 사 자 | | |
| | | | 직급 | 성 명 | 서 명 |
| 주민등록지 조사 | | | | | |
| 재 산 조 사 | | | | | |
| 허가 및 기타사항 | | | | | |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 | | | |
| 조 사 사 항 | | | 조 사 및 확 인 자 | | |
| | | | 조사자 : | | |
| | | | 확인자 : | | |

(뒷면)

| 결 손 처 분 표 | | |
|-----------------------------|---------|----------|
| 구 분 | 조 사 사 항 | 조사 및 확인자 |
|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 | |
| 2. 재 산 조 사 | | |
| 3. 인 · 허가사항 및 기타 재산 은닉여부 조사 | | |

210×297mm(A4종)

[별지 제14호서식]

| 체 납 정 리 심 의 회 심 의 안 | | | | |
|----------------------|---------|--|---------------------|--|
| 체납자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 |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사업장 주소 | | | |
| 체 납 액 | | | | |
| 납입통지서 및 독촉장 송달상황 | | | | |
| 체 납 사 유 | | | | |
| 체 납 자 의 재 산 상 태 | | | | |
| 조 치 및 조 사 사 항 | | | | |
| 결 손 처 분 사 유 | | | | |
| 년 월 일 ○ ○ ○ 장 (인) | | | | |

210×297mm(A4종)

[별지 제15호서식]

| 체납정리심의회 심의 · 의결 조서 | | | |
|--|---------|-------|---------------------|
| 체납자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 | 사업장 주소 | | |
| 위 체납자 외 명 | | | |
| 체 납 액 | 일금 | 원정 ₩ | |
| 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 | |
| 의 안 가 결 | 체납자 외 명 | 체 납 액 | |
| 의 안 부 결 | 체납자 외 명 | 체 납 액 | |
|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심 의 회 위 원 장 (인) | | | |
| | (인) | | (인) |
| | (인) | | (인) |
| | (인) | | (인) |
| | (인) | | (인) |

210×297mm(A4종)

[별지 제16호서식]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단위 : 원, m²)

| 관리 번호 | 체납자 | 체납액 | 전용농지현황 | | | 전용 목적 | 가결 및 부결 | 의결사유 |
|----------|-----|-----|--------|----|-----|----------|---------------|------|
| | | | 지목 | 면적 | 소재지 | | | |
| | | | | | | | | |

297×210mm(A4형)

[별지 제17호서식]

_____년 분기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산출내역

[수납기간 : . . . ~ . . .]

(단위 : 원)

| 관할청 | 분기수납액 | | | | 지급 제외액 (B) | 지급 대상액 (C=A-B) | 수수료 (C*요율) | 비고 |
|-----|-------|-----------|----------|-----------|------------------|----------------------|---------------|----|
| | 계(A) | 농림부 부과 | 시도 부과 | 시군구 부과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210×297mm(A4종)

[별지 제18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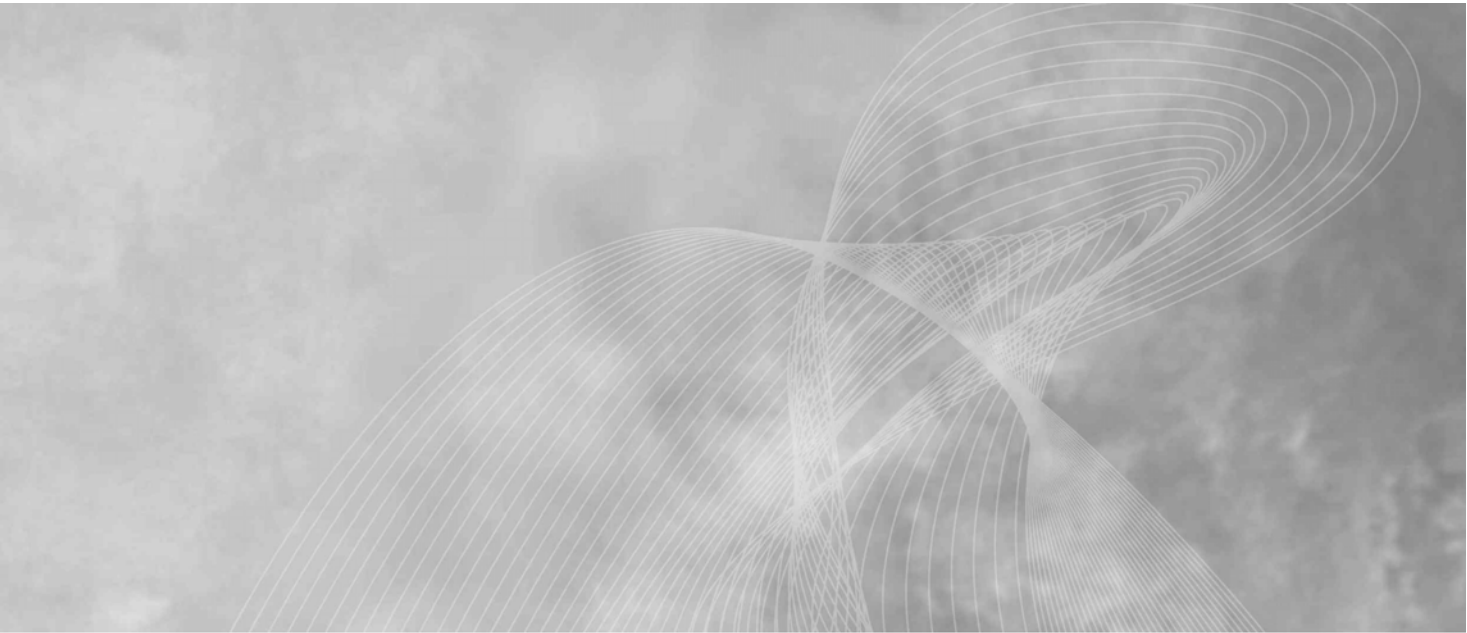
_____년 분기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지급현황

[시·도 : _____]

(단위 : 원)

| 관할청 | 지급액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 | | | | |
| 금회지급 | | | | | |
| 기지급 | | | | | |
| 합계 | | | | | |

210×297mm(A4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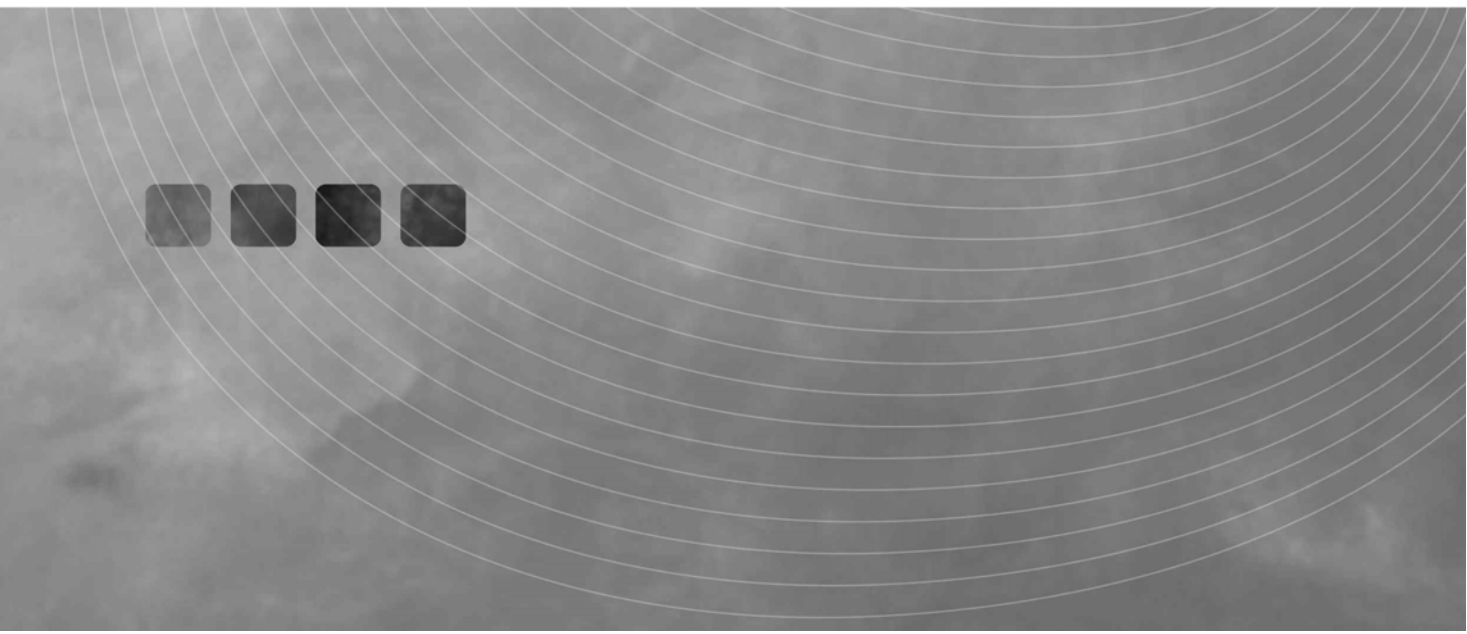
04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 | | | |
|----|--------------|-----------|--------|
| 제정 | 1995. 12. 29 | 농림부훈령 | 제842호 |
| 개정 | 1997. 3. 24 | 농림부훈령 | 제893호 |
| 개정 | 2001. 4. 6 | 농림부훈령 | 제1064호 |
| 개정 | 2002. 8. 26 | 농림부훈령 | 제1111호 |
| 개정 | 2006. 3. 22 | 농림부훈령 | 제1238호 |
| 개정 | 2007. 9. 4 | 농림부훈령 | 제1282호 |
| 개정 | 2008. 6. 10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제 20호 |
| 개정 | 2009. 8. 24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제104호 |
| 개정 | 2009. 11. 28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제176호 |
| 개정 | 2012. 7. 18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 제311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 제28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란 경지정리·간척지내부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진흥지역 변경”이란 당해 지역의 농지·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진흥지역 해제”란 도시관리계획변경,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되는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 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진흥지역 해제”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 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지정기준) ① 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 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지정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
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 밀집된 자연부락
3.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제6조(신규조성농지등의 진흥지역지정) 시·도지사는 경지정리·간척지내부 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속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절차) ①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군수”라 한다)은 현지조사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규정절차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주민의 의견청취결과,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도시계획부서의 검토의견(녹지지역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승인을 요청한다.

⑤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군수가 시·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 지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면·동에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진흥지역지정계획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의 2(개별통지 및 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규정절차에 의하여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 14일간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정절차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7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
2. 도로·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배수호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진흥지역의 해제대상) ①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3. 해당 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2.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
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도로(농도는 제외한다)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제11조(진흥지역 해제시 검토사항) ① 제10조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하천 등과 연결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
3. 해당 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수로가 차단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5. 삭제
- ② 삭제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역 변경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삭제

제12조(진흥지역 해제절차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관리계획변경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변경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농정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진흥지역 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승인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삭제

제13조(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관리) 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군·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② 지정고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정도면의 구획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성 배부한 진흥지역 상세도면(고시도면)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도면은 사본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되면 수시로 정정하여 각종 증명서가 착오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업무담당자 변동시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고시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인수·인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진흥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도면 등 정비) ① 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 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성명을 기재한다.

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

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 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

나. 토지조서는 해당 필지여백에 붉은색 고무인(해제)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한다.

②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는 진흥지역 지정·변경 고시와 동시에 정비함과 아울러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제15조(진흥지역 도면 및 조서정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정할 수 있다.

1. 지정도면 정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또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

2. 토지조서 정정 : 도면상 진흥지역 구획선외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구획선내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및 제1호의 경우

3.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정비 이후 토지조서·국토이용계획 등 관련 공부상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정도면 또는 토지조서를 정정한 때에는 정정부분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정정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고시도면 여백에 근거 공문사본, 정정고시일자 및 편입·제외여부를 표시하고 시·군·구 담당과장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관리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였거나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제한되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농지전용허가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제16조(진흥지역 변경·정정고시 및 결과보고 등) 진흥지역을 해제·용도구역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의 고시·결과보고 및 통지, 주민열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진흥지역 도면 또는 조서를 정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진흥지역 변동상황 보고) 시·도지사는 당해 년도의 진흥지역 지정·변경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종합전산정보망 진흥지역도면 활용) 전산화된 농업진흥지역도면은 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필지현황의 열람등 농지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고시도면 및 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1 >

농업지대 구분기준

1. 농업지대구분 목적

-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분포비율·영농유형에 따라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임

2. 농업지대구분 방법

가. 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농업지대는 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을 설정하고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평야지·중간지·산간지로 구분한다.

-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 전작지대, 혼작지대로 구분), 작목반 등의 생산유통 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가능한한 읍·면 또는 법정 리를 영농권의 경계가 되도록 하여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답작지대 : 논비율 70%이상, 전작지대 : 논비율 40%이하, 혼작지대 : 논비율 40~70%

< 농업지대 구분 기준 >

| 구분 | 기준 | 비고 |
|-----|--|----------------------------------|
| 평야지 |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상인 지역 | 농지분포비율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토양도를 기준으로 산정 |
| 중간지 |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상인 지역 | |
| 산간지 |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하인 지역 | |

※ 지대구분은 가급적 한국농촌공사에서 '91년에 작성하여 각 시·군까지 배부한 「시·군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안」의 지대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동 책자가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복사활용)

나. 녹지지역

- 녹지지역은 도시화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경지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개발제한구역인 녹지지역 : 중간지
- 개발제한구역이외의 녹지지역 : 평야지

< 별표 2 >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1. 지정기준설정 방향

-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한다.

2. 지정기준의 구분

- 진흥구역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 지정·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지정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한다.

가. 신규지정·편입·대체지정시의 적용기준

(1)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 다음과 같은 지역을 지정한다.
 - 평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위주로 대형농기계 투입이 가능하므로 집단화 규모 10ha이상인 지역
 - 중간지는 영농유형이 대부분 수도작 + 전작형태로서 7ha의 경우 기계화 연면적은 10ha의 효과가 있으므로 집단화 규모 7ha이상인 지역
 - 산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 전작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지형여건상 전작의 기계화는 어려우므로 수도작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화 규모 3ha이상인 지역
- 기준이하의 소규모 농지집단지역이라도 인접농지와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 여건변화로 진흥구역에 연접된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진흥지역과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2) 토지생산성의 기준

-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별 토지적성등급과 경사도에 따르는 다음의 기준을 농업지대별로 적용하되, 농지개량사업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기준이하라도 진흥구역에 포함한다.

| 지대별 | 논 | | 밭 | | 과 수 원 | |
|-----|------|--------|------|--------|-------|--------|
|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 평야지 | 5%이하 | 2급지이상 | 7%이하 | 2급지이상 | 15%이하 | 3급지이상 |
| 중간지 | 5%이하 | 3급지이상 | " | " | " | " |
| 산간지 | 7%이하 | " | " | " | " | " |

나. 주민희망지역의 지정기준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업지대구분, 도시계획구역 안·밖 구분없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농지 집단화도 | 논 | | 밭 | | 과 수 원 | |
|------------|------|--------|-------|--------|-------|--------|
|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경사도 | 토지적성등급 |
| 3ha이상 | 7%이하 | 3급지이상 | 15%이하 | 3급지이상 | 15%이하 | 3급지이상 |

○지역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에 관계없이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고 장차 농업목적으로 장기간 활용가능하며 투기 목적의 소유가 우려되지 아니할 것
- ② 해당지역의 재배작목과 영농형태를 감안할 때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한 지역일 것
- ③ 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 기타 생산기반투자가 가능하고 상당수준의 농업기계화가 가능할 것

< 별표 3 >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기준

1.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2. 녹지지역의 보호구역

-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녹지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녹지지역
 -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별표 4 >

지정계획도 작성방법

1. 구획선의 획정방법

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기 지정 고시되어 동 목적에 사용될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역외의 마을(자연부락)로서 1ha미만 구역내에 10호 이상 밀집된 자연부락은 마을내의 농지를 포함하여 취락부지로 제외한다.

나. 구획선의 획정방법

- 사용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축척 1:5,000지형도(1:5,000지형도가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지형도)를 활용하되, 구획선을 지적도에 이기할 수 있도록 1:5,000으로 축소된 지적도를 참고하여야 한다.
- 도로·하천·수로 또는 고저차가 뚜렷한 논둑 등의 지형을 구획선으로 활용한다.
- 곡간지형의 경우 농경지가 분포하는 곡간폭이 100m이상인 지역까지만 포함시킨다.
- 경사도 및 토지적성등급이 기준이하인 토지가 동일 농지집단구역내에 혼재할 경우 동일 농지집단에 포함하여 구획한다.
- 경사도 및 농지집단화규모에서 기준에 적합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토지적성등급에 불구하고 진흥구역에 포함하여 구획한다.
- 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이용현황에 근거하여 구획선을 설정한다.
- 하천부지의 경우 제방이 설치되었거나 하천정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방, 하천정비 계획이 없는 경우는 상·하류 하천폭등을 감안하여 제방 축조 가능선을 구획선으로 설정한다.

2. 구획선 표시 및 채색

- 지적이 표시된 축척 1:5,000지형도를 활용하여 구획선을 흑선으로 진하게 표시한다.
(진흥지역은 도면기준으로 행위제한을 하게 되므로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 진흥구역은 황색, 보호구역은 녹색으로 채색한다.

< 별표 5 >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 서류명 | 작성시 유의사항 | 비고 |
|---|--|---------------------|
|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요청서 | ○ <서식4>에 의하여 작성 | ○ 시·도농지 관리부서에서작성 |
| ②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 지적도와 대조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는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진흥지역임) - <서식5>에 의해 작성 ※ 전용허가·협의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협의신청 농지명세로 같음 | ○ 농지관리부서에서 확인·날인 |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현황 |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정비 계획을 <서식6>에 의하여 작성하고 진흥지역 도면⑧에 구역선 표시 - 경지정리·발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 ○ 관계부서에서 확인·날인 |
| ④ 농업생산기반 시설 편입여부 및 관계부서 의견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사장) 의견 첨부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 유지·농로·방조제·제방 등 | 〃 |
| ⑤ 사업계획(또는 개발 계획·실시 계획) 개요서 및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 개요서 | ○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도면은 지적도에 작성된 시설배치도(또는 개발계획도)만 첨부 - 실시설계도면, 지적종합도 등 기타 도면과 토지조서는 모두 제거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첨부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첨부 | ○ 사업시행자가 작성 |

| 서류명 | 작성시 유의사항 | 비고 |
|--------------------------|---|--|
| ⑥ 피해방지계획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 예상되는 피해 내용(피해의 종류, 범위 및 정도등)을 기재하고 피해종류별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드시 명시 -농로수로가 차단될 경우 대체시설 설치계획 도면, 오폐수가 배출될 경우 오폐수처리계획 도면 첨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재정비시는 작성불요(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시는 첨부) ○사업시행자가 작성, 날인 |
| ⑦ 농업진흥지역 도면(지형도, 위치도 겸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이 표시된 1/25,000지형도 원도에 작성 ○해제대상지역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적선으로 굵게 표시하는 한편 도로, 구조물 등을 표시 하는 등 가급적 최신 여건변화를 반영토록 지형도를 조제 -크기 : 지형도 원도크기(53×78cm) ※농지면적이 5ha미만인 경우에는 A4 크기로 작성 ○해제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1/25,000 도면상 20cm)까지의 진흥지역을 표시하고 기존 주요시설을 명시 -진흥구역 : 황색, 보호구역 : 녹색 * 구획선은 흑선으로 표시 ○개발예정구역선을 정확하게 표시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관리부서에서 반드시 확인 날인 ○필요시 위치도를 별도로 첨부 |
| ⑧ 지적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0 지적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하고 개발 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게 표시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관리부서에서 확인 날인 |
| ⑨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

※ 편철순서 : 상기 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진흥지역 해제 건별로 구분하여 편철

< 별표 6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2만㎡ 미만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 서류명 | 작성시 유의사항 | 비고 |
|----------------------------------|--|---|
|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요청서 | ○ <서식 7>에 의하여 작성 | ○ 시·도 농지 관리부서에서 작성 |
| ②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 지적도와 대조 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는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농업진흥지역임) - <서식 5>에 의해 작성 | ○ 농지관리부서에서 확인·날인 |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현황 |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정비 계획을 <서식 6>에 의하여 작성하고 농업진흥 지역도면에 구역선 표시 - 경지정리·발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 ○ 관계부서에서 확인·날인 |
| ④ 농업생산기반 시설 편입여부 및 관계부서 의견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시장) 의견 첨부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 유지·농로·방조제·제방 등 | ○ |
| ⑤ 지적도 | ○ 1/5,000 지적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하고 해제 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게 표시 - 도로·철도, 구조물 등을 표시 하는 등 가급적 최신 여건변화를 표시 토록함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농지관리부서에서 확인 날인 ○ 필요시 위치도를 별도로 첨부 |
| ⑥ 증빙서류 | ○ 도로·철도 공사등으로 자투리가 된 토지 사진 등 - 도로·철도 등의 준공검사증 등 사업완료 입증자료 첨부 ○ 진흥지역지정당시 기존 건축물 증빙서류 : 건축 물관리대장 등 ○ (삭제) | |
| ⑦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

< 서식 1 >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

1. 개 요

가. 지정위치

나. 지정경위

- ※ 개간·간척농지 신규지정, 주민희망지역 지정, 기반정비지역 편입 등 지정하게 된 경위 기재
- ※ 대체지정인 경우 목적사업별 해제면적 명시

다. 토지현황(시·군 전체)

○ 농지현황

(단위 : ha)

| 시·군 | 합 계 | 농 지 | | | | 비농지 |
|-----|-----|-----|--------|------|-------|-----|
| | | 계 | 농업진흥지역 | | 진흥지역밖 | |
| | | | 계 | 진흥구역 | | |
| | | | | | | |

※ 경지정리면적 : ha(년도 시행)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단위 : ha)

| 행정구역 | 용 도 지 역 별 |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 | 계 농 림 지 역 관 리 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 지 지 역 | | | |

※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분류

라. 농업생산기반정비현황 및 계획(지정대상지역)

- (1) 농업용수개발(실시연도 등)
- (2) 경지정리·밭기반 정비
- (3) 배수개선

마. 토지이용계획(지정대상지역)

2. 지정계획 면적

가. 행정구역별 용도구역별 면적

(단위 : ha)

| 행정구역 | 농업진흥지역 | | 진흥구역 | | 보호구역 | |
|------|--------|-----|------|-----|------|-----|
| | 필지수 | 면 적 | 필지수 | 면 적 | 필지수 | 면 적 |
| | | | | | | |

※ 1ha = 10,000㎡

나. 지목별 용도구역별 면적

(단위 : ha)

| 행정구역 | 지 목 별 | |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 | 합 계 | | | | |
| | 농 지 | 소 계 논 밭 과수원 기타농지 | | | |
| | 비농지 | | | | |

※ 유지·구거·농로·제방 등 농지개량시설부지는 기타농지로 분류(이하 각 서식에서 같음)

※ 기타농지 및 비농지는 세부 지목별 면적집계표를 별도로 첨부

※ 사실상 농지는 지적법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지목으로 분류

라. 지정예정지의 경사도 및 토지적성 등급

(1) 진흥구역의 경사도

(단위 : ha)

| 경사도별 | 계 | 계 | | | 평야지 | | | 중간지 | | | 산간지 | | |
|-------|---|---|---|-----|-----|---|-----|-----|---|-----|-----|---|-----|
| | | 논 | 밭 | 과수원 | 논 | 밭 | 과수원 | 논 | 밭 | 과수원 | 논 | 밭 | 과수원 |
| 계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6~7% | | | | | | | | | | | | | |
| 8~15% | | | | | | | | | | | | | |

※ 비농지는 제외

(2) 진흥구역의 토지적성 등급

(단위 : ha)

| 경사도별 | 계 | 계 | | | 평야지 | | | 중간지 | | | 산간지 | | |
|------|---|---|---|-----|-----|---|-----|-----|---|-----|-----|---|-----|
| | | 논 | 밭 | 과수원 | 논 | 밭 | 과수원 | 논 | 밭 | 과수원 | 논 | 밭 | 과수원 |
| 계 | | | | | | | | | | | | | |
| 1~2급 | | | | | | | | | | | | | |
| 3급 | | | | | | | | | | | | | |

※ 비농지는 제외

마. 농업진흥지역 토지의 지목별 조사

○○ 시·도 ○○ 시·군

| 일련 번호 | 토지소재지 | | 지번 | 지목 | | 주재배 작물 | 농업진흥지역(지적) | | | 비고 |
|----------|-------|-----|----|-----|----|-----------|------------|------|------|----|
| | 읍·면 | 리·동 | | 공부상 | 실제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 | | | | | | | | | | |

< 서식 2 >

농업진흥지역 지정 · 변경고시 결과

1. 근 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 - (20 . . .)

2. 고 시 일 :

3. 지정(편입) · 해제 · 용도구역변경 또는 정정고시 면적

가. 목적·사유별

(단위 : ha)

| 행정구역 | 목적 또는 사유별 |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 ○○군 | < 작성예시 > ○○초등학교설치 대체지정 | △3.0 3.0 | △3.0 3.0 | |

※ 해제면적은 △표시

나. 용도구역별 지목별

(단위 : ha)

| 용도구역별 | 계 | 농 지 | | | | | 비농지 |
|-------|---------|-----|---|---|-----|------|-----|
| | | 소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
| 지정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해제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4. 고시후 농업진흥지역 현황

(단위 : ha)

| 행 정 구역별 | 변 경 전 | | | 금회변경 (지정 또는 해제) | | | 변 경 후 | | |
|---------|-------------|----------|----------|--------------------|----------|----------|-------------|----------|----------|
| | 농업진흥 지 역 | 진흥 구역 | 보호 구역 | 농업진흥 지 역 | 진흥 구역 | 보호 구역 | 농업진흥 지 역 | 진흥 구역 | 보호 구역 |
| ○○시·도 | | | | | | | | | |

※ 1ha = 10,000㎡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지정도면(1/25,000지형도) 1부(승인요청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 서식 3 >

용도구역 변경 계획서

1. 위 치 :
2. 사업시행자 :
3. 변경요청내역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보호구역 → 진흥구역 (㎡)

< 토지편입현황 : 변경전 >

(단위 : ha)

| 용도구역별 | 합계 | 농 지 | | | | | 비농지 |
|---------|----|------------|---|---|-----|------|-----|
| | | 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경지정리면적 : ha(년도 시행)

4. 입안사유(시장·군수·구청장)

5. 시·도지사 의견

변경타당성에 대한 의견 기술

< 첨부 >

1. 변경도면 1부.
2. 변경요건입증서류 1부.

< 서식 5 >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의 지목별 조사

| 소재지 | | | 지번 | 지목 | 면적 (㎡) | 진흥지역 용도구분 | 전용면적 (㎡) | 주재배 작물명 |
|-----|-----|-----|----|----|-----------|--------------|-------------|------------|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 서식 6 >

농업생산기반정비 현황

| | 기시행 | | 시행예정 | |
|--|-----|----|------|----|
| | 연도 | 면적 | 연도 | 면적 |
|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 | | | |

* 편입요청지역의 생산기반정비 현황은 ()로 표시

※ 농업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면적은 수해농지 면적임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 서식 7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2만㎡ 미만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1. 위 치 :
2. 변경(안)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밖 ㎡

<토지편입현황>

(단위 : ㎡)

| 용도구역별 | 합 계 | 농 지 | | | | | 비농지 |
|----------------------------|-----|-----|---|---|-----|------|-----|
| | | 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
| 합 계 | | | | | | | |
|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년도 시행)

3. 입안사유(시장·군수·구청장)

※ 도로, 하천, 철도 등의 개설(완공) 연도를 표시하여 여건이 변한 사유를 설명

4. 시·도지사(농지보전부서) 의견

가. 해당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나. 해당 농지의 해제사유 타당성 여부

다. 종합의견

○ ○ 시장 (도지사) 관인

< 서식 8 >

농업진흥지역 지정 · 변경현황(연말보고용)

1. 20 현재 지정현황

가. 용도구역별·지목별 면적

(단위 : ha)

| 행정구역별 | 용도구역별 | 합계 | 농 지 | | | | | 비농지 |
|-------|--------------------|----|-----|---|---|-----|------|-----|
| | | | 소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
| ○○시·도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 흥 구 역 보 호 구 역 | | | | | | | |
| ○○시·군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 흥 구 역 보 호 구 역 | | | | | | | |

※ 1ha = 10,000㎡

나.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면적

(단위 : ha)

| 행정구역별 | 용도구역별 | 계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녹지지역 |
|-------|--------------------|---|------|----------|------|
| ○○시·도 | 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보 호 구 역 | | | | |
| ○○시·군 | 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보 호 구 역 | | | | |

※ 관리지역은 진흥지역 지정시 모두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해도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음에 유의

※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먼저 된 경우에는 변경 되기전 용도지역 면적으로 집계

2. 지목별 증감면적

(단위 : ha)

| 행정 구역별 | 지목별 | 전 년 말 | | | 당 년 말 | | | 증 감 | | |
|-----------|--------|---|------------------|------------------|---------------|------------------|------------------|---------------|------------------|------------------|
| | | 농 진흥 지역 | 진 흥 구 역 | 보 호 구 역 | 농 진흥 지역 | 진 흥 구 역 | 보 호 구 역 | 농 진흥 지역 | 진 흥 구 역 | 보 호 구 역 |
| ○○시·도 | 계 | | | | | | | | | |
| | 농 지 | 소 계 | | | | | | | | |
| | | 답 전 과 수 원 기 타 농 지 | | | | | | | | |
| | | 비 농 지 | | | | | | | | |
| ○○시·군 | 계 | | | | | | | | | |
| | 농 지 | 소 계 | | | | | | | | |
| | | 답 전 과 수 원 기 타 농 지 | | | | | | | | |
| | | 비 농 지 | | | | | | | | |

※ 전년말 면적과 「3. 증감사유별 면적」을 가감하여 당년말 면적과 일치되어야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없이 전용된 면적(3-다)은 농지면적에서 감하고 비농지 면적으로 집계해야 함

3. 증감사유별 면적(도전체면적만 표시)

가. 농업진흥지역 증가

(단위 : ha)

| 용도 구역별 | 지 목 별 | | | | | | 증 가 사 유 별 | | | | | |
|------------------------|-------|--------|---|---|--------|--------|-------------|--------------------------------------|--------------------------------------|--------------------------------------|---------------------------------|------------------|
| | 계 | 농 지 | | | | | 비 농 지 | 지 정 | | | | 정 정 기 타 |
| | | 소 계 | 답 | 전 | 과 수 | 기 타 | | 신 규 농 지 조 성 지 역 | 주 민 편 입 희 망 지 역 | 생 산 기 반 정 비 지 역 | 개 발 계 획 변 경 등 | |
|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 | | | | | | | | | | | |

※ 대체지정 면적 : ha(진흥구역 ha, 보호구역 ha)

나. 농업진흥지역 감소

(단위 : ha)

| 용도구역별 | 지 목 별 | | | | | | 감소사유별 | | | | | |
|------------------------|-------|----|---|---|----|----|-------|----------------|-------------------------|----------|------------------|----------|
| | 계 | 농지 | | | | | 비농지 | 해제 | | | | 정정 기타 |
| | | 소계 | 답 | 전 | 과수 | 기타 | | 농어 업용 시설 | 공용, 공공용 및 공익시설 | 주거 시설 | 광·공업 및 댐시설 | |
|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 | | | | | | | | | | | |

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지감소

(단위 : ha)

| 행정구역별 | 지 목 별 | | | | | 전 용 목 적 | | | | |
|------------------------|-------|---|---|----|----|------------|---------------------|----------|------------------|----|
| | 계 | 답 | 전 | 과수 | 기타 | 농어업용 시설 | 공용·공공용 및 공익시설 | 주거 시설 | 광·공업 및 댐시설 | 기타 |
|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 | | | | | | | | | |

※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없이 농지전용으로 감소된 면적이므로 농지전용상황보고서상의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전용면적과 일치되게 작성

라. 용도구역상호간 변경

(단위 : ha)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 | | | 보호구역 → 진흥구역 | | | | | |
|-------------|---|---|-----|------|-----|-------------|---|---|-----|------|-----|
| 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비농지 | 계 | 답 | 전 | 과수원 | 기타농지 | 비농지 |
| | | | | | | | | | | | |



05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 관리규정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정 2009. 11. 20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74호

개정 2012. 7. 18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정보화사업”이란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농지정보시스템”이란 농지업무에 공간정보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3.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농지분야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관리하거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농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

제4조(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 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운영하여야 하는 농지정보시스템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자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작업권한을 해제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 비밀번호)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비밀번호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 비밀번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서(GPKI)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농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개선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농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시·군·구 단위에서 변경된 공간정보를 수정·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통합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도
2. 농지전용현황도
3.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그 변동사항을 수정·갱신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경지정리현황도(1/25,000)
2. 배수개선현황도(1/25,000)
3. 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도(1/25,000)

④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1. 연속지적도
2. 국토이용계획도

제10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등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 시스템과 상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도
2.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②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

1. 농업진흥지역도
2. 농지전용현황도
3. 영농여건불리농지도

제12조(장애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시스템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하거나 24시간이내에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농지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장비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자료와 상이한 자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군·구 자료와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복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백업)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 활용

제15조(공동활용 범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농지정보시스템 또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자체 활용하게 하거나 농지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 통해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활용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요청서를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과업기간, 사업목적, 관련 근거 법령 등 일반사항
2. 공동활용 목적

3. 요청정보 내역
 4. 기타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내용전반에 대한 설명자료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법·제도적 타당성
 2. 공동활용을 위한 기술적 적정성 여부
 3. 기타 공동활용 관련사항 등

제17조(공동활용 승인 등의 통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정보시스템 등 공동활용 요청서 및 공동활용을 위한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활용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목적과 요청자료의 부합성
 2. 농지정보시스템 등 공동활용 방안의 타당성
 3.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 등 공동활용 승인 여부를 지체 없이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목적
 2. 공동활용 방법
 3. 공동활용 제공정보

제18조(공동활용 승인받은 자의 의무) ① 요청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없이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승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공동활용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요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에 따라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농지정보시스템 등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각서 수령증 작성·제출)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제20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23조(농지정보시스템 교육)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분산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화사업 연수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농지정보시스템 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설문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농어업·농어촌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55호)
2. 농림부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065호)
3.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종합설계도 관리 및 활용 지침(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64호)
4.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7호)
5.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련 법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지정보시스템 운영대상

| 구 분 | 주요기능 | 데이터베이스 연계 | | 주사용자 |
|-------------------|--|--|---|------------------------|
| | | 농지공간정보 | 농지정보 | |
| 농촌행정연계 (행정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정보(농지원부/소유농지/농지조사) 전국 조회 -취득자격증명발급현황 전국 조회 -농지원부 자료정보대상 추출 및 모니터링 -농지 및 농가 관련 통계 제공 -전국 농지전용 및 직접지불제 신청농지 조회 -농지은행사업 지원농지 조회 | | 농지원부(농지조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전용 직접지불제 신청농지 농지은행 지원농지 |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
| 시군구 농지정보 (행정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진흥지역도/농지전용현황도/영농여건불리농지 관리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와 지적도 연계조회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농지 조회 및 도면출력 | 업속지적도 농업진흥지역도 농지전용현황도 영농여건불리농지 국토이용계획도 | 농지원부(농지조사) 농지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 시군구 |
| 농지공간정보 (행정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해상도영상정보 · 연속지적도 기반에서 농지정보 조회 -농업진흥지역 및 영농여건 불리농지 통계 제공 | 업속지적도 농업진흥지역도 농지전용현황도 영농여건불리농지 국토이용계획도 고해상도영상정보 | 농지전용 직접지불제 신청농지 농지은행 지원농지 |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
| 현장조사 (모바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PS를 이용한 농지위치 찾기 -농지관리 현장조사 대상농지 조회 및 조사결과 입력 | 업속지적도 농업진흥지역도 영농여건불리농지 | 농지원부(농지조사) 농지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직접지불제 신청농지 |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산하기관 |
| 지도서비스 (행정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해상도 영상정보 · 연속지적도 기반의 농지정보 제공 | 업속지적도 고해상도 영상정보 | | 농식품부 산하기관 관련기관 |
| 농지공간포탈 (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도 기반 농지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웹서비스 제공 -농식품부 농지전용현황의 신청(신청서 및 관련서류) | 농업진흥지역도 농지전용현황도 배수개신현황도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도 | 농지전용현황의 관련서류 | 대국민 |

【별표2】

사용자권한 부여기준

| 기관별(업무담당) 업무별 |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 | 산하기관 | 관련기관 |
|------------------|-------------|------|------|------|------|
| | 농지담당 | 전용담당 | 직불담당 | | |
| 농지관리(농지원부 등) | ○ | ○ | ○ | - | - |
| 농지전용 | ○ | ○ | - | - | - |
| 직불제 | ○ | - | ○ | - | - |
| 현장조사 | ○ | ○ | ○ | ○ | - |
| 공간정보서비스 | ○ | ○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요청서 | |
|--------------------------|--|
| ①사업명 | |
| ②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 |
| ③과업기간 | |
| ④사업목적 | |
| ⑤관련근거 | |
| ⑥공동활용 목적 | |
| ⑦요청내용 | |
| ⑧제공받은 자료의 보유기간 | |
| ⑨자료관리 및 파기계획 | |
| ⑩담당자/연락처/E-mail | |

【별지 제2호 서식】

보안각서

본 기관(또는 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농지정보시스템등 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업무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 ○ 사장(시장/군수/원장) (인)

200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06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

I. 농지원부 개요

1.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

○ 농지·농업 관련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로서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 감면 대상자 확인 및 농협대출 등을 위한 확인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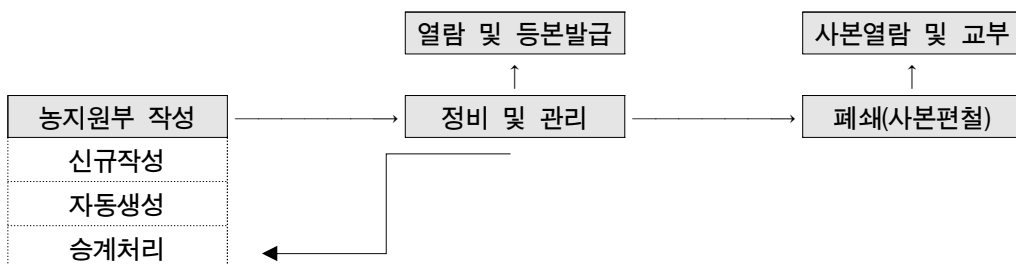
2. 주요 등재내용

● 일반현황 : 농가주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지번, 면적, 농지구분, 경작구분 등

● 임차농지현황 : 지번, 면적, 농지구분,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등

3. 농지원부 업무흐름



II. 농지원부 작성

1. 작성 기관

- ㉞ 농업인의 주소지(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이하 '관할기관'이라 함)에서 작성·비치
 - 해당 관할기관에서는 농업인 및 구성원이 소유·임차하고 있는 모든 농지(관할구역 내 농지와 관할구역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
 - ※ 시장·구청장이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 관할기관을 동 단위로 함

2. 작성 대상

- ㉞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
- ㉞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단위별 작성을 원칙으로 함
 - 농업인 : 「농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단위)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준농업법인 :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3. 작성 시점

- ㉞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즉시 작성
 - 농지원부는 과거의 농업경영 사실을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행정착오 및 시스템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만 최초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

4. 작성 요령

1) 신규 작성

가. 일반현황 등록

- ㉞ 고유번호 및 최초작성일자
 - 고유번호 : 법정동·리 지역코드(10자리) + 행정구분(행정리/동 1자리)
+ 농가구분(농업인/농업법인/준농업법인 1자리) + 순번
(4자리)
 - 최초작성일자 : 해당 농가가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한 날짜로,
농업경영을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㉞ 농가주 등록

- 농가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
 -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등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하여 관리
- 농업외겸업 : 전업농의 경우 공란으로 두고,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입

㉞ 농가구성원 등록

- 세대원 : 동일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등재하며, 세대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농지소유 비동거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취학·질병·군입대·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세대에서 퇴거한 비동거가족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록
 - ※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혼인·분가 등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 해당 세대의 농지원부를 신규작성해야 함
 - ※ 농가구성원은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출입 처리되므로,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의 경우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등록

나. 소유농지 및 임차농지 등록

㉞ 소유농지 등록

- 미등록소유농지의 농지조서(농지소재지에서 관리)를 조회하여 등록
 - 관할구역 밖 농지의 농지조서를 등록할 때에는 농지소재지에 요청하여 해당내용을 등록·수정한 후 관리기관에서 농지원부에 반영
 - ※ 민원인의 입증서류 중 소관청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 농지조서,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가 있는 경우 사본 등을 제출받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
 - ※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면 본인확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관리

㉞ 임차농지 등록

- 농지소재지에서 해당농지의 농지소유인정보에 경작구분을 '임대'로 입력한 후, 관리기관에서 임차농지 등록
-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면, 구두)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
 -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및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침

-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 ※ 개인간임대차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재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농지는 농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차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

〈 농지조서관리 〉

1. 농지조서등록

- ㉞ 농지소재지의 담당자가 토지대장을 근거로 농지구분, 경지정리여부, 농지면적, 실제지목, 공부지목, 주재배작물, 공유인 정보 등을 등록
 - 농지구분 :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입력
 - 최종확인일 : 담당자가 주재배작물 등 해당 내용을 최종확인한 날짜 (자료수정일이 아님)

2. 농지소유인등록

- ㉞ 농지소재지의 담당자가 농지조서 등록 후 소유한 공유지분별로 각각의 농지소유인, 농지면적, 경작구분 등을 등록
 - 농지면적 : 공부면적 외에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입력
 - 농지소유인이 부분경작 할 경우 동일지번을 두 건으로 입력하여 각각의 경작상황에 맞게 입력
 - 한 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2인 이상이 각각 경작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면 공유자수를 지정하여 각각의 지분에 따라 등재
 - 경작구분 : 농지의 경작상태로 자경, 임대, 임차, 휴경 등
 - 경작상황 조사 시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거치고 임대, 휴경의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확인받은 사항을 등재
 -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경작상황을 조사하며, 인근 주민 및 이장·통장 등 지역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파악
- ※관할구역 밖 농지는 새울행정시스템(농촌행정)의 ‘경작사실의뢰확인관리’ 메뉴를 통해 경작상황 조사의뢰 및 결과회신

2) 자동생성 농지원부의 등록

- ㉞ 자동생성 농지원부는 조직형태값을 개인으로 변경하고 미등재 내용을 정비한 후에 직권으로 작성한 농지원부와 동일하게 관리
- 최초작성일, 농가고유번호 등은 자동생성 시 등재된 값으로 관리
 - 단, 최초작성일이 9999.01.01로 등록된 농지원부는 등재내용을 확인·정비한 후 최초작성일을 해당일로 갱신하여 관리
 - ※ 1000㎡ 이상의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원부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임차인 및 공유인이 있거나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생성되지 않으므로 미등록소유농지를 조회하여 신규 작성

3) 농지원부 승계 작성

- ㉞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인이 그 경영자산을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 하는 때에는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
- 승계하는 사람이 비동거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가능

Ⅲ. 농지원부 관리

1. 기본사항

- ㉞ 목적외 사용금지(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 농지원부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해서는 안 됨
 - ※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름

㉞ 기재사항 누설금지(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 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됨

㉞ 농지원부 수기작성 자료와 전산처리 병행 금지

- 농지원부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망 구축(00년)에 따라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관리되므로 수기 작성된 농지원부와 이중작성 금지

㉞ 농지원부 등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철저

-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비하고, 농가주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정비
 - 특히 현지조사나 농업인의 요청에 따라 등재하는 임차농지, 사실상농지 등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 및 관리 철저
- 소유농지 및 임차농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 소유농지 : 소유권 변동, 경작구분 등
 - 임차농지 :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농과 농지소유자 확인을 거쳐 정비

2. 농지원부 정비

1) 일제 정비

㉞ 관리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 중점 정비항목 : 경작면적 미달 농지원부, 농지소유권 변경, 임차기간만료·누락, 농지원부 중복작성, 관리기관과 거주지 불일치(법정동 불일치 농가)

※ 새울행정시스템(농촌행정) 및 농지정보시스템(<http://nj.mifaff.go.kr>)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의 농지원부 정비대상 자료를 출력하여 자료 정비

2) 수시 정비

- ㉞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비하고, 농가주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정비
- 중점 정비항목을 포함하여 정비하며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등재 사항이 미비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지원부에 등재
 - 경작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는 수시로 경작상황을 확인하여 정비
 - 농지소재지가 농지원부 작성기관의 관할구역 밖인 경우는 농지 소재 기관에 사실 확인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비
-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원부 정비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각종 직불제 신청 및 이행점검 자료,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시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 및 소유권변동 사항을 반영
 - 농지은행의 임대차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임대차관계 갱신

3) 정비대상 및 정비요령

가. 중점 정비대상

- ㉞ 경작면적이 미달된 농지원부의 작성중단
 - 등재된 경작면적이 1,000㎡(시설330㎡)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추가 경작 필지를 조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농가주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관
 - ※ 농지원부를 폐쇄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
- ㉞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의 농지원부 정비
 -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에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

하였을 때 관리기관장은 해당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

- 관할구역 밖 농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요청하여 변동처리 후 관리기관에서 농지원부에 변경처리

※ 농지의 소유권 변경사항은 농지소유인정보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공유자 및 임차인이 있거나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농지조사관리→농지소유권변경처리' 메뉴를 활용하여 정비

㉞ 임차기간 만료·누락농지 정비

- 임차기간이 만료되거나 누락된 농지는 임차농지 등록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 내용을 정비

㉞ 중복 작성된 농지원부 사본편철

-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작성하므로, 한 세대에 두 개 이상 농지원부가 작성된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
- 농가주 또는 농가구성원이 두 개 이상의 농지원부에 중복하여 등재된 경우 세대별 상황에 일치하도록 정리

㉞ 관리기관과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농지원부 이송처리

- 전산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인 농가주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등 관리기관과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농지원부가 발생했을 경우 농가주의 주소확인 후 전출입처리 실시 및 사본편철
 - 전출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입지에 작성을 의뢰하고 해당 농지원부를 사본편철

나. 기타 정비대상

㉞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의 농지원부 신규작성

- 농지원부 작성대상에 포함되는 농가주를 파악하여 신규 작성하며 시스템을 통해 자동생성된 농지원부는 등재사항 확인 후 등록

㉞ 농지조서 등록 및 관리

-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사실상농지는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지조서에 등록·관리
 - ※ 지방세 과세자료는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농지원부->농지조서연계관련정비관리->농지조서실제지목변경처리 참고)
- 농지조서 중 진흥지역밖의 실제지목과 공부지목이 모두 전·답·과수원이 아닌 자료는 삭제하고, 진흥지역안의 토지는 진흥지역지정 현황 파악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조서에 등재·관리
 - ※ 지목 등재현황은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농지원부->농지조서관리->농지오류자료현황 참고)
- 농지구분(진흥지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은 변동사항 확인후 자료 갱신
 - ※ 국가토지정보시스템(KLIS)의 토지용도구분 변경시 새울행정시스템에 실시간 전송(농지원부->농지조서연계관련정비관리->농지구분변경처리 참고)
- 농지조서에 등재된 항목은 관련공부 확인,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제에 맞게 수정·보완
 - 경작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는 수시로 경작상황을 확인하여 정비
 - 소유인이 등록되지 않은 농지조서는 현황을 파악하여 등록

관련법령

<농지법>

- 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② 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 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개정 2006.1.2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제57조 (농지원부화일의 정리·보관 등) ① 농지원부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화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12.28>

IV.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1.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접수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 : <운영지침 별첨> 위임장 참조

- 열람 신청은 농지원부 관리기관 내에서만 접수·처리
- 등본발급 신청은 새울행정, 민원24, 무인민원 등을 통해 접수

| | 관외농지 미포함 농지원부 | 관외농지 포함 농지원부 |
|-------------|------------------|------------------|
| 새울행정 |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발급 |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발급 |
| 민원24 | 자동발급 |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발급 |
| 무인민원(KIOSK) | 자동발급 | 발급 불가 |

※ 자동발급은 모든 필지의 경작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

- ⑥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허용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가 가능함

2. 열람 및 등본발급 방법

- ⑥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시 신청자의 신원과 경작상황 등 등재 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등본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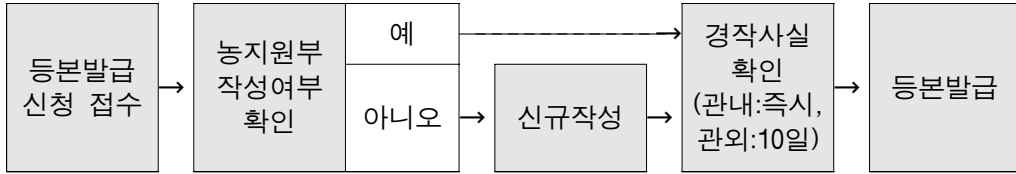
- 다만,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거나, 농한기로써 경작상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고 계속하여 영농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작상황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경작상황 확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등본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민원인 요청이 있으면 해당 필지의 경작구분을 음영처리하여 발급

※ 단 1,000㎡(시설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등본발급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경작상황확인을 완료해야 함

- 등본교부기간(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 : 즉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



3. 이력자료 발급 및 폐쇄된 농지원부의 사본 교부

- ㉞ 과거에 등록되었던 소유 및 임차농지 이력자료(2004년 5월 이후)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이력포함' 메뉴를 이용하여 발급
- ㉞ 폐쇄하여 사본편철된 농지원부를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사본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발급이 불가능하며 원본대조확인(필)에 의한 사본의 교부만 가능

V. 자경증명의 발급

㉞ 발급방법

- 발급기관 :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 (위임된 경우 동장 포함)
- 발급대상 : 자경하고 있는 농지법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자경의 정의

- 「농업인」 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 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

㉞ 발급신청

- 자경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60호 서식)를 당해 농지소재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㉟ 신청인의 농업경영 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고,
- 자경증명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 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관련법령

<농지법>

-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 제58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 ③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1>
- 제59조 (자경증명의 발급)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1>

<붙임>

위 임 장

수임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을 위임함

아 래

-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교부 신청
-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열람 신청

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년 월 일

시 · 구 · 읍 · 면 · 동장 귀 하



07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03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2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상한금액

○ 제공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중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6-1호는 이를 폐지한다.



08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16호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제57호에 따라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1. 연결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농지이거나 연결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을 위한 진입로(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2. 산림과 연결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09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17호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제58호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
 - 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 안의 농지
2.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m² 이상인 농지
3.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m² 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지관련 규정집(훈령·예규·고시)

- **만든날** 2012년 7월 25일
 - **퍼낸날** 2012년 10월 25일
 - **만든곳**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TEL : (02)500-1720
 - **퍼낸곳** 농림수산식품부
-